세계인권선언 75주년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개정할 결심

일 시 2023. 4. 11.(화) 14:00~17:00

장 소 이룸센터 이룸홀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DDASK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세계인권선언 75주년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개정할 결심

일 시 2023. 4. 11.(화) 14:00~17:00

장 소 이룸센터 이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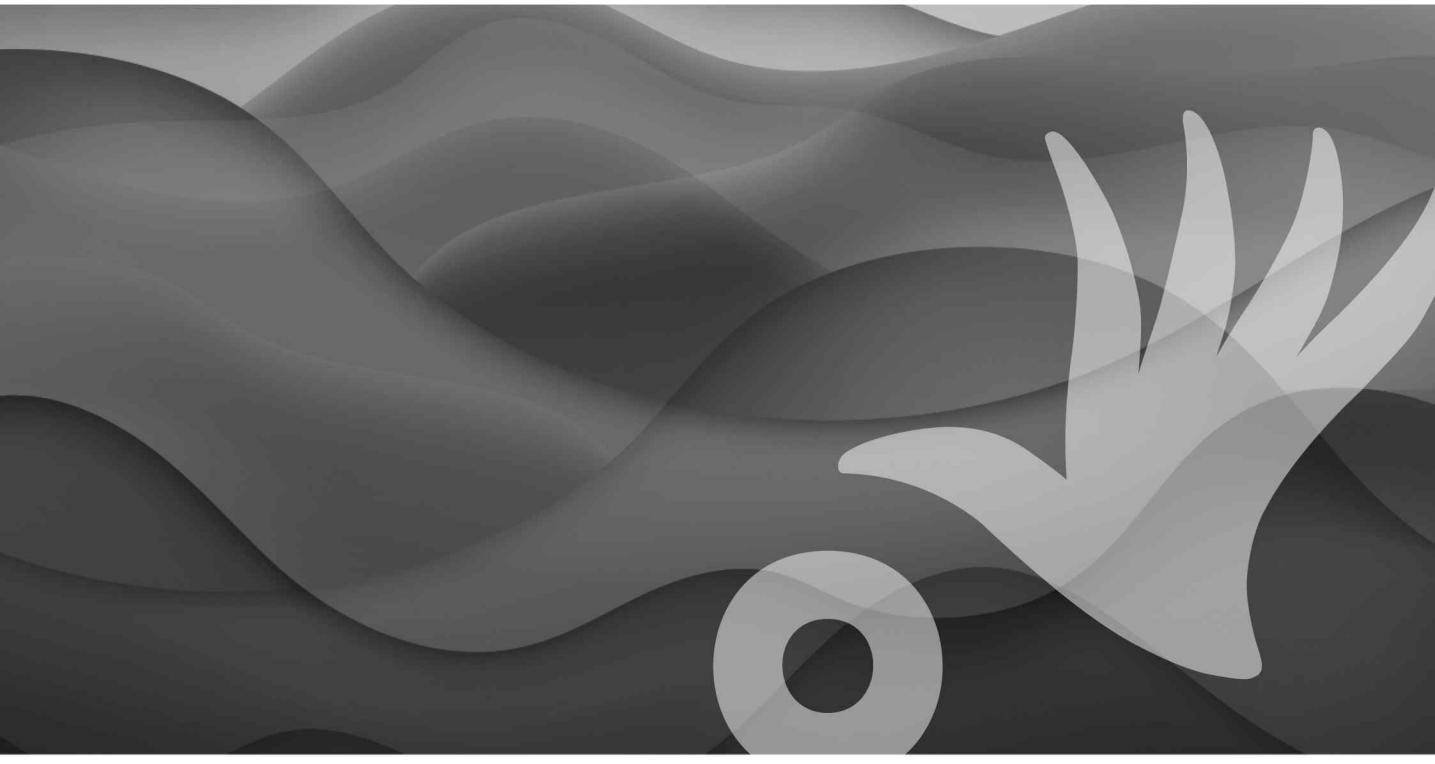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DDASK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개정할 결심

□ **일　　시 : 2023. 4. 11.(화) 14:00~17:00**

□ **장　　소 :**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영등포구 소재)

□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프로그램**

시간	세부내용
식전행사	축하공연 및 개회식
14:00~14:15 (15분)	- 사회 :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인사 : 남규선(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 식전공연 :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법률지원팀 변호사 수어 노래 이수연(법조공익모임 나우), 정지민(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조미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부	**< 토크콘서트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돌아보기'**
14:15~14:25 (10분)	○ **영상 상영** '장차법 제정부터 오늘까지' 역사 기록
14:30~15:30 (60분)	○ **장차법 제정 과정과 성과** - 사회: 박옥순(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대표. 전 장차법연대 사무국장) - 패널: 김동범(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전 장차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염형국(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국장. 전 장차법연대 법제정위원회 위원) 김광이(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대표. 전 장차법연대 법제정위원회 부위원장) - 질의응답
15:30~15:45	○ 휴식
2부	**< 좌　담　회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할 결심'**
15:45~16:55 (70분)	**○ 좌담회** - 사회: 안은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과장) - 발제: 김재왕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 토론: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센터장) - 질의응답
16:55~17:00	**폐회 및 기념사진**

인사말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남규선입니다.

오늘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5주년을 기념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님,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년 전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차별금지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률은, 300여개의 단위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로 결합하여 이루어낸 투쟁의 산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정에 힘써주신 모든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아가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과 초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시혜와 배려의 언어가 아닌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의 언어로 인간다운 삶을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권위는 사회 곳곳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었고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하나로 매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2023년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전면개정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 끝에 맺어진 결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짚어보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준비단(태스크포스팀)의 구성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22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 개인진정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국내 절차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한 구제와의 조화, 실효성 있는 운영 방향에 논의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차별시정기구인 인권위는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귀 담아 듣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을 계기로 이후 15년의 새역사를 도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11.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남규선**

15년 전에 이루고 싶었던 꿈

15년 전 만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7년 동안 외쳤었다. 장애인이 학교에서 노동현장에서 동네에서 이동하면서 가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또 만들어야만 한다고 외치고, 부딪히고, 논의하고, 싸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다.

결국, 2007년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우리는 간절하게 실효성 있고, 강력한 법률이 제정되길 바라며, 기나긴 투쟁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 힘이 모자랐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쉬움을 차곡차곡 접으며 우리 장애인이 차별에 대한 저항의식이 더 커져서 언제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을 이루어내길 원했다.

15년이 지난 현재 장애인의 차별인식이 변화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에 실효성이 더욱 필요해졌다. 그래서 전면 개정을 하기로 하였다.

오랜 장애인차별에 대응하여온 법률가들과 활동가들이 모여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었다. 물론 더 많은 의견과 논의를 하여야 하겠지만, 이번만큼은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차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거듭되기를 바란다.

한편으로는 15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개정되길 바람을 가져야 하는 우리 현실은 15년 전과 다름없이 장애인차별이 여전히 있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다. 과연 15년 후에는 장애인차별이 없어져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폐지되는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꿈을 감히 꾸어본다.

꿈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꾸는 것이라고 한다.

실효성 있고 강력하고 미래지향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을 올해 꼭 이루어지길 꿈꾼다. 꿈은 꿈을 꾸는 자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15년 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하였고, 우리는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분명한 것은 장애인이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2023. 4. 1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박김영희**

축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기념행사 '개정할 결심'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주최하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노력 끝에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지난 15년간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왔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익 소송 등을 통한 구제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적 모델에 치중된 장애의 정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 쉽게 하는 등 아쉬운 지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회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및 영역에서도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된 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한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한 지난 15년을 함께 돌이켜보며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장애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최근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앞장서는 등 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애인차별금지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들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하시는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11.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

축 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기념행사 “개정할 결심”>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국가인권위원회・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5년 전 오늘은, 우리나라 장애인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장애인을 향한 인식이 지금보다 더 엄혹했던 시절, 시민사회와 국회가 힘을 모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많은 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위기로부터 장애인을 지키는 방패막이며, 무엇보다 장애를 개인의 의학적 손상에서 사회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차별로 다시 정의하는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바뀌는만큼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도 크게 늘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등원하고 장애인도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한 것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장애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국내 장애인 권리의 미진함을 지적하는 권고가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장애등급제가 일부 폐지되었고, 정신장애인 서비스를 가로막았던 「정신건강복지법」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도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다시 설계할 시간입니다. 지난 시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그러했듯이, 다시 시민사회와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릴 행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이후, 지난 15년을 복기하며 현황과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수많은 당사자・활동가・전문가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 장애인의 권리를 한층 고도화할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저도 행사에서 오가는 고견들을 경청하고, 국회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기념행사 “개정할 결심”>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애인차별이 뿌리 뽑히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 4. 1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축 사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장애인운동과 인권운동 역사에 길이 남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느덧 시행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법 제정운동과 시행 15년을 함께 일구어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기념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라는 헌법재판소의 선언으로부터 볼 수 있듯이, 국가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고 원칙은 무엇보다 ‘평등’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여전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필수적 생활 영역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습니다. 이러한 차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 및 구제하는 법안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 라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전 생애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받아온 장애인 당사자에게 차별에 맞서 싸울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로 괄목할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장애인 차별이 늘어났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다르게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구분·분리·배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바로 그것이 차별이라고 세상에 울려퍼진 목소리들입니다. 존재해왔지만 목소리내지 못 했던 차별들이 의미를 획득하고 변화를 일구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러나 법 제정 당시 장애계가 요구한 내용이 오롯이 반영되지 않은 탓에 한계도 확인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일부 개정에 그치는 등 근본적 개선은 이뤄지지 못 했습니다. 무엇보다 2008년 비준된 UN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국내 이행에 걸맞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지난해 UN이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 불인정'을 지적하는 등 많은 과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 시행 15주년을 맞이해 지난 15년을 되돌아보고 법 개정을 결의하는 이번 자리가 더욱 뜻깊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공동주최해주신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행 15년 돌아보기' 토크와 '개정할 결심' 토론회에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념행사를 통해 나눠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저와 정의당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11.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목 차

1부 <토크콘서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과 15년의 의미 …… 15

사회: **박옥순**(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대표. 전 장차법연대 사무국장)

패널: **김동범**(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전 장차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염형국(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국장. 전 장차법연대 법제정위원회 위원)

김광이(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대표. 전 장차법연대 법제정위원회 부위원장)

2부 <좌담회>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계와 개정 필요성

사회: **안은자**(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과장)

발제: **김재왕**(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 27

토론: **서원선**(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 119

우주형(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 131

신석철(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센터장) …… 135

부 록 …… 14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토크콘서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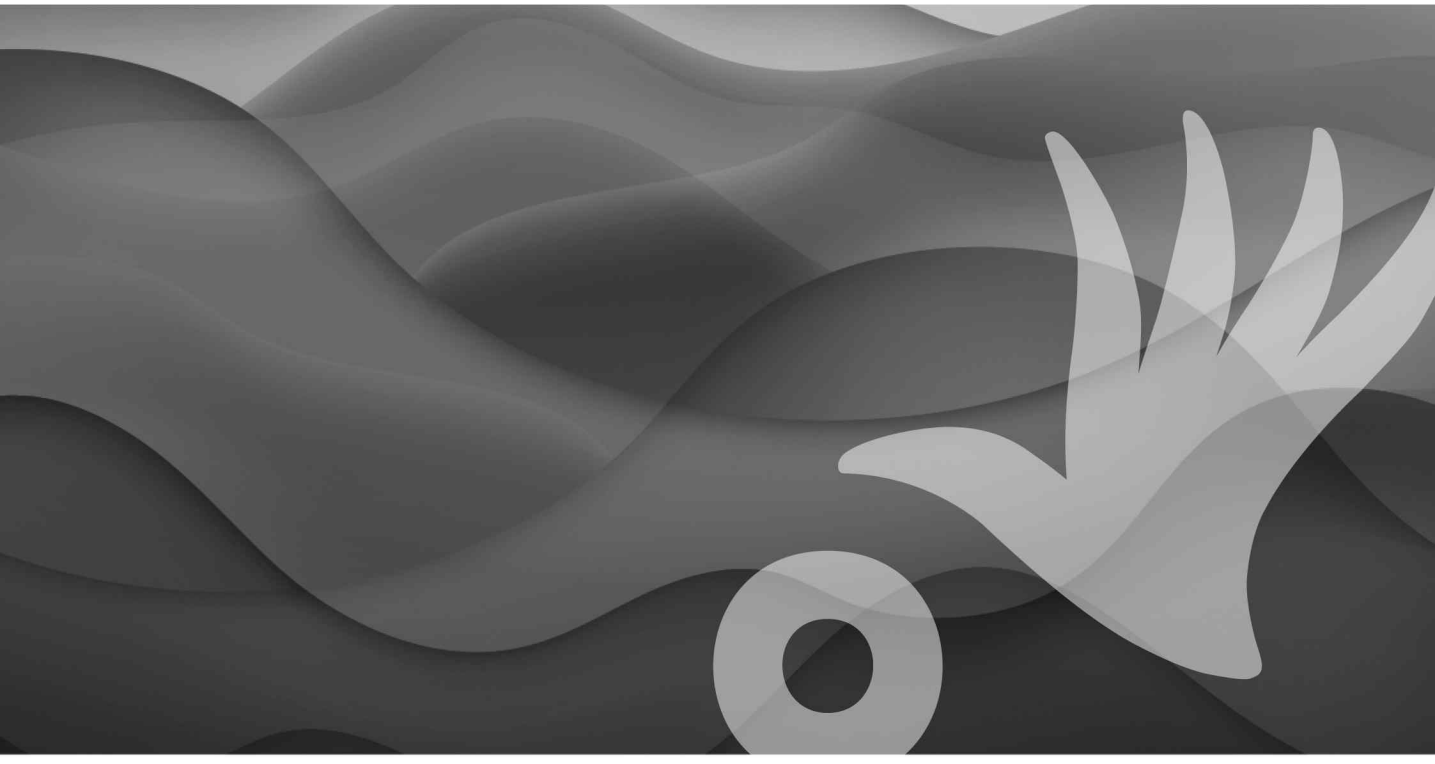

〈1부〉 토크콘서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5년 돌아보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차법연대)
박옥순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대표)　　전, 장차법연대 사무국장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전, 장차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국장)　전, 장차법연대 법제정위원회 위원
김광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대표)　전, 장차법연대 법제정위원회 부위원장

1) 장차법제정연대 결성 배경과 성과

장차법연대를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각고의 노력 끝에 전 장애계가 모였고, 법 제정까지 단일대오를 유지,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원동력이라고 말입니다. 장차법제정연대가 왜 결성되었는지, 그리고 결성과정에서는 어떠한 활동과 성과가 있었는지요?

2) 법 제정을 위한 대중 활동 성과

소중한 연대체 결성 이후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법안 마련 과정은 매주 1회 30-40여 명의 장애인활동가, 인권활동가, 법률활동가들이 모여서, 차별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를 조문화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동, 재화용역, 장애여성 등 부문과 영역별 차별 사례 모임과 이를 조문화하는 과정이 있었구요. 그리고 법안순회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협력단 등. 대중의 힘을 모아 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가 성과는 무엇이었는지요?

3) 법 제정을 반대한 경제계 등에 대한 대응 투쟁

국회에서는 고 노회찬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여당의 장향숙 국회의원의 추가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심층화 되고 있었지만 국회 밖에서는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경제계 세력도 있었고 독립적인 법안을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지요?

4) 법 제정 후, 시행 15년간의 활동과 성과

법 제정 이후 15년이 지났습니다. 법 제정 이후 장애인단체들의 활동과 성과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집단진정, 상담전화, 공익소송, 법개정 등

5) 장차법 향후 과제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 물론 법개정도 필요한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걸어온 길 -

<법제정과정>

2003. 4. 15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추진연대 출범식

4. 2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2003 공동선언 및 백만인 서명운동

6. 25~10. 29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 마련 위한 연속 공개 토론회

11~2004. 4. 장애인 당사자 차별경험 취합 구두.서면.인터넷 등 의견취합

2004. 5.14 장애인차별금지법안 공개워크숍 (100여명 참여 1박2일)

7~2004. 9 지역순회 공청회 (부산, 대구, 제주, 대전, 충청, 광주, 경남.전남)

10. 법학자 법조인 자문토론회

11.16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법률(안)” 확정

2005. 4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원 발의 결정 질의서 전달

2005. 9. 20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각 당의원 37명 공동발의

2005, 9. 22~10. 5 실효적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및 노숙농성 돌입

2005. 10. 26~2006.1. 2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공동투쟁단 국회 앞 천막 농성

2006. 3. 28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 돌입

2006. 4. 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회찬의원 대표 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정

2006. 5. 22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필요성 인정 전원위원회 결정

2006. 11. 7 장차법 제정 반대 경총 회장 면담요구 활동가50여명 임원실 점거농성

2006. 9. 19~11. 16 장차법 제정 위한 전국장애인결의대회

2006. 12. 18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조정안으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의원 54명 공동발의

2006. 12. 18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한나라당 의원 38명 공동발의

2006. 12. 18 정부부처 참여 3개당 법안을 열린우리당안 주요내용으로 통합 심의절차시작

2007. 2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2007. 2. 22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가결

2007. 3. 2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2007. 3. 6 재석의원 197명 중 196명 찬성 제265회 국회 임시회의 본회의 통과

2007. 3. 6 장애인차별금지법 2월 국회 제정 끝장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 정리

2007. 4. 10 공포

<법시행 준비과정>

2007. 5. 29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공청회

2007. 7. 9~8. 2 (릴레이설명투쟁) 인권위원을 장애여성으로 선출하라 요구 릴레이 성명 투쟁

2007. 10. 10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력을 보장하라 기자회견

2007. 10. 19~10.30 장차법 시행령 관련 개별 부처 면담

2007. 12. 14~12. 21 정부주도의 장차법 시행령 중단 및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 요구

2008. 1. 10 청각문화산업대학교 청각장애인 교수 장애인차별 해고무효소송 승소

2008. 2. 1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안 발의

2008. 4. 1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008. 4. 1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동기념 행사,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주최

<법적용 및 이행과정>

2009. 1 독서장애인의 접근권향상을 위한 WIPO 조약 촉구

2009. 3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규제 일몰제 철회 요구

2009. 4. 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토론회

2009. 6. 장애인보험차별 근거조항 상법 제732조 삭제 개정안 통과 촉구

2009. 9. 2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 신설

2010. 2. 9 시청각 장애인 정보접근 의사소통차별 집단진정

2010. 2. 25 시설 내 광고차별 금지를 위한 진단진정

2010. 2. 25 화성 정신장애인 지역주민 강제입원 세대전출 요구 사건 대응

2010. 7. 22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법률 제개정 활동 (상법 732조 보험가입 차별)

2010. 9. 7 방송3사 홈페이지 웹접근성 차별시정 집단진정

2010. 12. 8 장애인 보험차별 금지를 위한 집단진정

2010 ~2012. 공동모금회 3차년 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적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진행

2010.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모니터링 장애인차별 집단진정 (567곳)

2011. 7. 한국 형사소송 사건 최초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조력인 배치 재판진행(발달장애여성 방화사건)

2011. 10. 14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를 보고싶다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11. 11.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일부개정

2011. 12. 장애유형별 보험가입 차별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2011. 서울지역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모니터링 장애인차별 집단진정 (170곳)

2012. 6. 정신장애인 차별 편견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2012. 8. 금융,문화,예술, 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차별 집단진정

2012. 9. 하조대 해수욕장 장애인숙박시설 건립 거부 양양군수 장애인 차별 긴급진정

2012. 10. 피성년후견인 등의 자격제한 관련 법률 삭제를 위한 토론회

2012. 11.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P&A 제도)를 위한 토론회

2012 서울경기 문화예술금융체육활동 모니터링 장애인차별 집단진정 (355건)

2012 제18대 대통령선거 장애인참정권 모니터링 집단진정

2013 장애인 웹접근성 환경에 대한 의무대상 민간 기업체 모니터링 결과 집단진정

2013 자폐성장애여성 성폭력 재판 조력지원

2013 구립 스포츠센터 시각장애여성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2013 소목장 지적장애인 부부 무노동 임금착취 사건 대응

2013 지적장애인 이웃주민으로부터 금전갈취 및 학대사건 형사지원

2014 제6회 동시지방선거 참정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진행

2014 국가자격시험에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정책모니터링

2014 전국 장애인버스환경 점검 모니터링

2014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를 위한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개선 연구

2014. 3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 편의시설 설치 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

2015. 6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이용거부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

2016 장애인고용공단 상담과정에서 수어통역 미제공 국가인권위 진정

2016. 2 시각.청각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

2016 시각장애6급(한쪽눈 시각장애) 장애인에 대한 1종시험 응시 자격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2016. 6 중증뇌병변장애인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차별적인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016. 10 메르스 감영상황에서 장애인차별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

2017 뇌병변장애인 투표보조 선택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7. 5 법원의 장애인범죄자 벌금형대체 사회봉사신청기각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2017. 8 제주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2017. 12 유모차형 휠체어 출입 거부 외식업체에 대한 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2018 중증장애인 뇌병변 상속배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2018. 4 공중이용시설 장애인접근 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

2018. 5 지하철 리프트이용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2018. 8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2018. 8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시 장애인 이동권 제한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2018. 8 '시설신규입소금지' 정책권고 요구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2018. 8 놀이기구 이용 보호자 미동반시 탑승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2018. 3 신길역 리프트 이용 장애인 추락사망사건 유족 손해배상청구 소송

2018. 5 위험시설 지하철 리프트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 차별구제청구소송

2018. 4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접근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

2018. 6. 엘리베이터 설치, 수어통역사 배치 장애인 참정권 보장촉구 긴급 기자회견

2018. 8 폭염속에 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24시간 보장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진정

2018. 11 국내 첫 재판과정에서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수어통역 동시제공

2018. 12 청각장애인에게 정보제공 의무 불이행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차별 진정

2019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2019 이해찬. 홍준표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차별 진정

2019 발달장애인 장콜 보조석 착석거부에 대한 인권위 진정

2019. 5. 국가공무원법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자격제한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2020. 4 선관위 발달장애인 참정권 차별 진정

2020. 6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사건 행정소송 제기

2020 지구대 파출소 및 치안센터 장애인접근성 모니터링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참정권 모니터링’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혐오표현 모니터링

2020. 12 정신장애인 공무원임용차별 행정소송 제기

2021. 4 HIV 감염인 장애인 차별 및 장애인정 요구 진정

2021. 6 대한민국 국적없는 시설거주 장애인 체류자격 방안 마련 진정

2021. 8 시각장애인 홈쇼핑 이용에서의 차별 진정

2021. 9 중증장애인 국적취득시 자산증명 차별 진정

2021. 11 청각장애인 택시운전 자격시험 편의 미제공 차별 진정

2021. 11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DT)서비스 이용에서의 청각·언어장애인 차별 진정

2021. 11 2022년 대통령선거, 발달장애인 기표소 투표보조 허용 임시조치 신청

2022. 12. 발달장애인 공직선거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

2022. 3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미지원 차별 손해배상청구 제기

2022. 5 대통령 선거 시기 장애인 참정권 차별 집단진정

2022. 7 지방선거 시기 장애인 참정권 차별 집단진정

2022. 9 지적장애인에 대한 중도금대출거부, 차별 진정

2022. 9 장애이주여성 건강보험료 해결 차별 진정

2022. 11 언어장애인 법원직 공무원 면접과정 차별 불합격처분 소송 제기

2022. 12 중도장애 노동자 원직복직 거부 차별 진정

2022 무인정보단말기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2023. 1 롯데월드 어드벤쳐 이용에서의 보호자동반 강요 차별 진정

2023. 3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불법녹음설치 차별 진정

2023. 4 대안학교 장애인차별전형 진정

MEMO

MEMO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좌담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김재왕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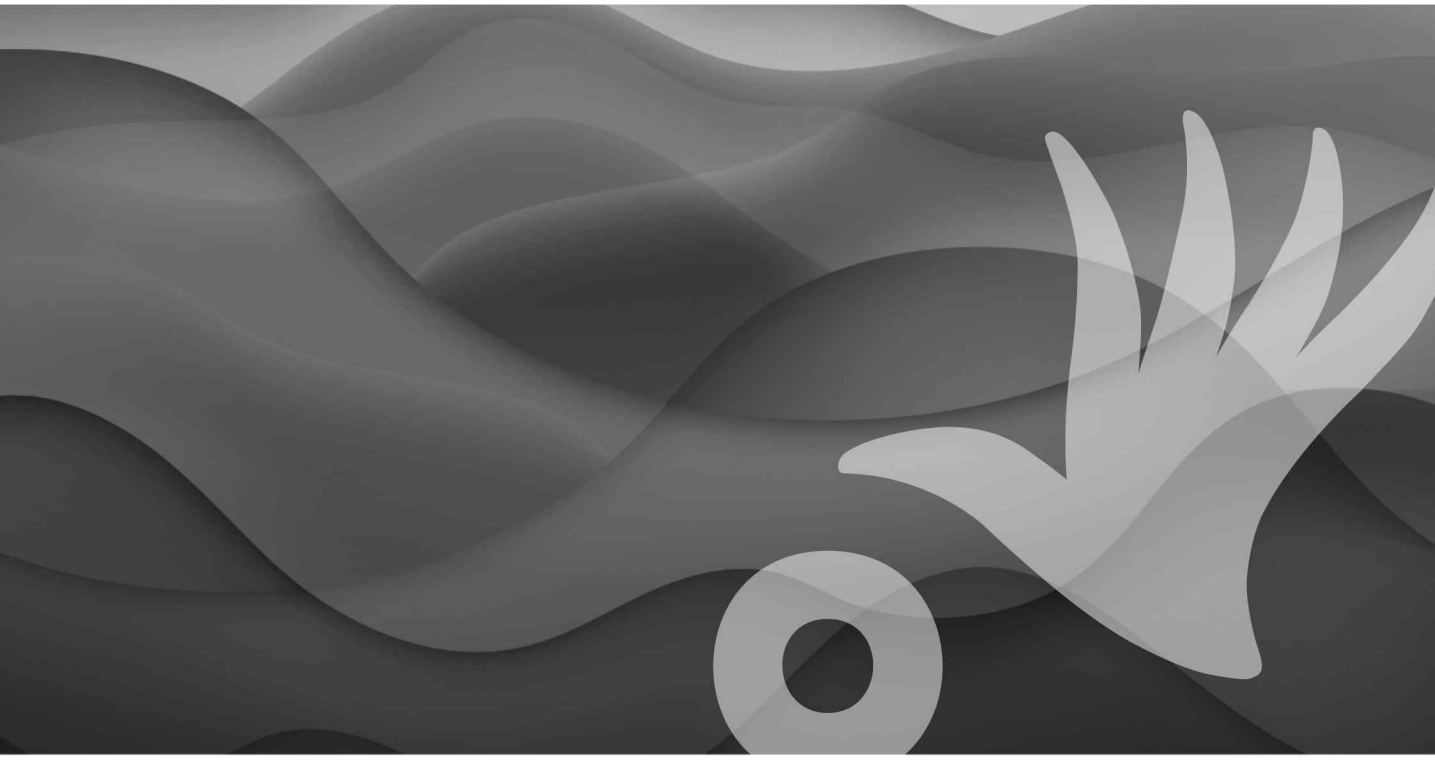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김재왕(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 취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년동안 전체적인 법안에 대한 방향과 지향점을 다시 정리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함

○ 시행 15년동안 변화된 장애인의 권리의식과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법안의 변화가 필요

○ 2007년 차별금지를 담는 새로운 법 제정 과정에서 초기법안에 제시되었던 실효성있는 주요 내용들이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채 제정시행됨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와 관련한 다수 법안이 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내용들의 반영 필요

○ 제정시행당시 시행령에 명시되었던 단계적 적용에 대한 삭제 및 정리 필요

○ 시행 15년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진행된 소송 및 진정 과정에서 법의 적용과 해석을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 방향>

○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을 기준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범주 확대

○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라는 차별행위 판단에 대한 조건 문구 삭제 장애인에 대한로만 규정 차별 판단의 범위 확대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우선 적용 명시 등 소송이나 차별

시정과정에서 실효성 강화

○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수립 시행 과정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참여 보장

○ 시행령에 위임한 기본적인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을 본법에 명시하여 법 적용에 원칙과 의무 강화

○ 기존법안에 미비했던 정신적장애인(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내용 추가

○ 구성이나 순서 내용상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삭제를 통해 법 전체의 체계 완성

○ 재난상황에서의 차별조항추가, 괴롭힘 조항에 대한 강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조항 추가 및 강화

○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등 이 법에 따른 소송절차 강화를 통해 장애인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개정 사항>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장애와 장애인)

-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목적 수정,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규정 반영

○ 제4조 (차별행위)

- 제32조의 괴롭힘 행위에 차별행위 추가

○ 제5조 (차별판단)

-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경우에 이를 예외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로 규정, 예외적용의 경우에도 차별로 판단

○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장애인권익옹호 및 차별예방 교육 실시 의무 추가

- 정책 수립 시행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참여 보장

○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우선적용

-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적용

○ 제9조의 2 (법적용의 원칙)

- 금지하는 차별행위 및 이 법령에서 예시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최소한의 기준

- 이 법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적용에서 배제하면 안된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직장보육서비스 내용 추가

<제2절 교육>

○ 제13조(차별금지)

- 교육징계절차(학폭위, 교권위 등)에서의 장애를 고려한 판단 의무 규정

○ 제14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이 법률 규정 준수 감독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서 법규정 준수 여부 확인 의무

○ 제19조의 2(재난 등 안전관리상황에서의 차별금지)

- 재난 및 안전관리상황에서의 차별금지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 제29조의2(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금지)

- 장애인의 성적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

<제6절3 가족•가정•복지시절, 건강권 등>

○ 제30조의2(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 및 행위금지
- 사회적 지위.관계.장애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장애인에게 고통을 주는 표현 및 행위금지
- 언론,보도,방송,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에서의 장애인 차별 내용 포함 금지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법적,정책적 조치 마련의무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 제46조(손해배상)

- 이 법규정을 위반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 규정

○ 제46조의2(소송비용의 특례)

- 이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감면

○ 제48조의3(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의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

- 차별행위를 알게 된 경우 차별행위를 시정할 권한이 있는 자 및 기관 등에 신고, 신고자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 세부내용>

제1장 총칙

현행법률	개정안	개정사항	개정이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를 이유로 (삭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규정 -헌법과 국제인권협약 기준 제시	-'장애를 이유로' 라는 소극적 기준을 삭제하고 장애인이 받는 차별을 전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반영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장애라 함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정의 반영	-손상을 기준으로 정의된 장애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인 기준으로 반영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상업적 목적의 상품 및 용역광고를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장애인노인등을위한 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	-1. 광고물 관련 법률 기준 추가 -3.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폐지삭제/ 장애인보조기기법 제정 추가	-정의 관련하여 폐지 또는 신설된 법안의 내용 반영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진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이용·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을 제외한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8.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15 복지시설 범위에 이용시설 추가 /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추가 **신설 18. 성적지향 정의 추가** **신설 19. 탈시설 정의 추가 (탈시설지원법 발의안 규정 반영)** -18-->20 -19-->21	-이전 복지시설의 범위가 거주시설 위주로 규정, 현재 이용시설에서의 차별 다수 발생함으로 정의규정에 이용시설 포함 -정신장애인의 차별 대응 강화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을 포함 -탈시설 등 자립지원 과정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규정 추가, 지원책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차별받지 않고 안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규정 추가

	19. “탈시설”이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20.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21.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2.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	-20-->22 -21-->23. 괴롭힘 범위에 혐오표현 및 행위 추가	-최근 혐오표현 및 행위 등 혐오차별 다수발생 이에 따라 괴롭힘 조항안에 혐오를 포함하도록 규정

	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3.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 또는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혐오표현 및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	-1.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	-장애와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장애인이 받는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어려운 상황 발생, 이에 불필요한 조건인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등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삭제

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신설 4. 괴롭힘 행위 추가**	-제32조에 괴롭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칙의 차별행위안에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차별행위로 판단받지 못하고 본법의 적용이 어려운 지점 발생, 규정을 명확히 하기위해 차별행위안에 각호에 규정 추가
3. ~~정당한 사유 없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3.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4.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5.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5.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각호 위치 변경에 따라 내용변경 -5.--> 7.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4호 → 5호) 6.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5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5호 → 7호)	-‘정당한 편의’ 범위에 ‘정책.관행.절차’ 포함 -③--> 제5조 ②로 이동	-물리적인 서비스 편의시설 중심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 이에 정책과 제도안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으로 내용이 범위 확대 및 강화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정책·관행·절차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①항 삭제 -'성별' 위치변경 -② 제4조 3항에서 이동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볼 수 있다.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의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 성별을 맨 뒤쪽으로 위치변경 (전체 일괄적용) **-현행조항에서 예외적용을 차별로 판단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부득이한 사항이라해도 차별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예외일뿐임을 명시 또한 예외적용의 경우에도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으로 한정하도록 규정**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과거 장애 경력이 있었던 자 및 장애가 있다고 추측되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를 '장애인'을 중심으로 변경	-차별받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법을 재구성, 단순히 장애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강화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를 '장애인 등'으로 표시 **-신설 ③** **-신설 ④** **-신설 ⑤장애인권익옹호 및 차별예방 교육 규정**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를 '장애인 등'으로 표시하여 의미 명확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당한 편의제공를 받지 못하는 경우와 관련판결 다수발생 (예: 공직선거법에 장애관련 편의제공 내용 부재로 선관위에서 편의제공 의무를 하지 않고 있음)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익옹호 및 차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대상,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참여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를 고려하여 법령·정책을 집행할 것을 의무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관련교육 규정마련, 명확한 교육 내용 제시를 통해 장애인차별 및 권리옹호에 대한 교육 의무화 -본법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등 당사자 중심의 법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 등에 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보장안됨, 이에 관련규정 추가
제8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의무)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사의무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추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을 통한 장애인차별사안 대응이 범위가 매우 넓음, 또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통해 이미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에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추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u>및 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와 <u>제3항에 따른 참여의 방식 및 절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추가 **<u>-신설 ③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참여 보장</u>** -④ ③의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참여방식 및 절차 규정 포함	-실태조사 진행시 장애인당사자의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체계마련 방식과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장애를 사유로 ' 삭제	
	제9조의2(법적용의 원칙)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및 이 법령에서 예시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	-**조항 신설**	-본법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발생, 법에 열거 및 예시되어있는 편의내용은 최소한의 규정이므로 법에 직접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정당한 편의제공의 종류로 판단해야 함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현행법률	개정안	개정사항	개정이유
제10조(차별금지)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차별금지) ②사용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조 2항 → 10조 2항)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②--> 제10조 ② 이동 -②-->③ 변경	현행법률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포함되어 있으나 조항의 내용은 명백한 차별금지의 내용으로 제10조로 이동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6. 세부기기 등 삭제 --> '보조기기 설치 운영 및 보조인 배치'로 범위규정	-6. 정당한 편의 종류는 새로운 기기의 개발과 사회변화속에서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상황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기의 설치·운영 및 보조인의 배치 7. 원할한 수유지원, 자녀상태 확인을 위한 소통방식 지원 등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7. 직장보육서비스 내용 추가 -신설 8. 그 외 필요한 사항 추가 -②-->제10조로 이동 -③-->② 단계적 적용 범위 삭제	또한 현행법의 내용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보조기기나 방법 등도 포함하고 있어, 기본적인 내용만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 -7. 여성조항에 있었던 직장보육서비스의 내용은 여성 남성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고용규정으로 이동시켜 배치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	-'질문이나' 추가	-채용 이전에 장애와 관련한 질문도 차별행위이지만 규정이 미비하여 내용 추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기 위한 질문이나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교육

현행법률	개정안	개정내용	개정이유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제한, 배제,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에 대해 전학을 강요하거나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교육책임자는 장애인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장애를 고려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① 삭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 차별행위 원칙 포함 수정 -③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 -④ '장애를 이유로' 삭제 **-신설 ⑨ 교육징계절차(학폭위, 교권위 등) 내용 추가**	-법의 기준을 두지 않아도 모든 학교가 해당되므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 -학교폭력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에 발달장애학생이 도전행동으로 인해 회부되는 사건 다수 발생, 이에 관련 절차에서의 장애고려를 위한 내용 추가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6. 징계절차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교육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의사소통조력인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호 → 7호)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6. 징계절차에서의 편의제공** -6.-->7. 이동 -③ 단계적 적용 범위 삭제	-징계절차에서 현재 관련 편의제공 조항이 미비하여 추가 규정
	제14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조항신설 : 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복지법' 해당규정 반영**	-법 제정당시 학교를 중심으로만 내용 구성, 현재 각종시험에서의 편의제공 등 차별행위 적용이 어려우므로 추가내용을 장애인복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및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규정을 중심으로 반영하여 추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현행법률	개정안	개정내용	개정이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 이 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장애를 이유로' 삭제 -④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삭제 **-신설 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본법 준수 여부 규정** **-신설 ⑥ 타 법령의 인.허가 과정에서 본법 준수 여부 규정**	-재화 용역에서 가맹점 사업자에 의한 차별행위 다수 발생, 가맹점 형태의 매장도 추가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조항 신설 -다양한 인가 허가 관련법률(예: 건축법 등)에서 관련업무 진행시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판단 필요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분리·배제·거부-->제한·배제·분리 ·거부 (나열 순서변경)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정 : 정당한 편의제공 각호로 정리 추가** -④ 삭제	-시행령에 있는 관련 내용을 본법에 각호로 규정하여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강화, 기타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재화.용역 관련법률 모두 동일하게 변경)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장애인의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를 위한 출입문, 위생시설, 피난 및 대피시설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의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를 위한 보조인력(지원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를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보청기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③ 불리한 요금 제도 적용에 이유 가 되는 부분 삭제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당한 편의제공 기본내용 추가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u>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인력 및 호출수단, 이동 및 교통수단에 대한 알기 쉬운 이용 및 대피 안내, 그 밖의</u>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 -⑧ 삭제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 2(재난 등 안전관리상황에서의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하 '안전관리상황'이라 한다,)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장애인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조항신설**	-지진, 홍수 등 재난상황과 코로나 등 감염병 상황, 기후위기 등 새로운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이 오히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함으로 배제되면서 위기상황에 대응이 어려움, 이에 관련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등을 강화

	2. 장애인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장비 및 용품의 안전점검 및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애유형별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에 관련 정보의 제공 5. 그밖에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참여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	-①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포괄 수정 / '장애를 이유로' 삭제 / '장애인에게'로 변경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쉬운 말 설명,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쉬운말 설명' 추가 /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	제21조(정보접근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21호·제22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	**-제21조 전면수정 : 제21조 정보접근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제21조 2(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1조 3(방송.통신 출판에서의 차별금지)로 분리하여 수정**	-정보통신은 통신에 대한 서비스제공유형이고, 의사소통은 정보접근 방식인데 두가지 내용이 하나의 법조항으로 규정되면서 제대로된 편의제공을 명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법의 구성도 매우 복잡함. 이에 내용을 분리하여, 전반적인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그리고 방송 등 분야별 내용으로 재구성

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한국수어, 문자, 음성, 쉬운 말 설명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		

	제21조의 2(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공공기관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음성통역·쉬운 말 설명·보청기기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진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음성통역·쉬운 말 설명·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이 전항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1조의 3(방송·통신·출판에서의 차별금지) ①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우리말 녹음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말 녹음 추가)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 방송.통신, 출판에서의 차별금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③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 납본한 경우는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른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③ 삭제	-후견인제도 등에 대한 별도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읽기쉬운 자료 추가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① 2항의 각호 변동에 따라 수정 -② 시행령에 정당한 편의제공을 본법에 각호로 정리	-시행령에 있는 관련 내용을 본법에 각호로 규정하여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강화, 기타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재화.용역 관련법률 모두 동일하게 변경)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읽기 쉬운 자료, 보청기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강구'하여야--> '마련'하여야 -④ 삭제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u>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u>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u>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u> 다음 각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및 관광지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음료대 및 판매대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	-② 시행령에 정당한 편의를 본법에 각호로 정리 ③ '강구'하여야-->'마련'하여야 -④ 삭제	-시행령에 있는 관련 내용을 본법에 각호로 규정하여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강화, 기타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재화.용역 관련법률 모두 동일하게 변경)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보청기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보조인력 및 장비, 기기의 이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5. 그 밖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음료대 및 판매대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배치 3. 장애인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② 시행령에 정당한 편의를 본법에 각호로 정리 1. 체육활동(체육활동 관람 포함) 이루어지는 공간의 시설의 편의에 대한 규정 추가	-시행령에 있는 관련 내용을 본법에 각호로 규정하여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강화, 기타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재화.용역 관련법률 모두 동일하게 변경)

	4.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읽기 쉬운 자료, 보청기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5. 장애인의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6.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7.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장애인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현행법률	개정안	개정내용	개정이유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6조 조항위치변경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호변경으로 제6호 제7호로 변경 -1. '허가,신고,인가 등'-->'처분,신고,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로 변경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함' 추가 **-신설 ④ :처분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④-->⑥ 이동 **-신설 ⑤ :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전문가의 의견 청취 요건 규정**	-허가, 인가 등은 모두 '처분'의 일종으로 간략하게 정리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특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제4항의 처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⑤-->⑧ 이동 -④-->⑥ 이동 -⑥-->⑦ 이동 -조사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기관 추가 범위 확대	-사법기관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의무도 함께 규정하기 위하여 추가하여 확대적용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공공기관 및 그 소속 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사법기관 및 조사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사법절차 및 조사 징계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 및 조사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사법절차 및 조사 징계절차에서 조력을	-⑤-->⑧ 이동 -⑦-->⑨ 이동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공공기관 및 그 소속 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인적 지원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⑨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27조(참정권)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참정권)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3.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4.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투표 보조원의 배치 5. 그 밖에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참정권에서의 편의지원을 각 호로 정리	-시행령에 있는 관련 내용을 본법에 각호로 규정하여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강화, 기타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수어, 점자, 음성, 이해하기 쉬운 자료·영상,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	-③ 정보제공방법 세부 규정 추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구든지 수어, 점자, 음성, 이해하기 쉬운 자료·영상,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현행법률	개정안	개정내용	개정이유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수유, 육아, 양육 등에 관하여 장애인의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을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인의 입양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모・부성권에 대한 사회적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고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모・부성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① 수유,육아 추가 / 모부성권 보장을 세부적으로 내용 추가 -② 장애를 이유로 삭제 -⑤ 차별행위 세부 내용 추가 / 지원. 감독은 삭제 -신설 ⑥ : 행정적,재정적 지원책 마련 의무규정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장애를 이유로 삭제 -③ 지원책에 대한 내용 추가	
	제 29조의 2 (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지향을 존중하고, 성적지향을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신설**	-장애인이 성적지향과 관련한 차별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관련규정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과정에 있어 장애인 등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이에 따른 절차와 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현행법률	개정안	개정내용	개정이유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생활공동체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족, 가정, 생활공동체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각 공동체 내에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 가정, 생활공동체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족, 가정, 생활공동체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생활공동체 추가 /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 -신설 ② 차별에 대한 기본원칙 내용 추가	-법 제정당시 복지시설이라는 부분이 거주시설 중심으로 논의되어 규정이 들어가게 됨, 이에 현재 확대되는 다양한 형태의 거주공간과 이용공간으로 범위 확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가족,가정, 생활공동체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가족,가정, 생활공동체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다른 가족 등과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이 복지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⑦ 친권포기각서 등은 현재 요구하지 않음으로 삭제 -**신설 ⑧ : 복지시설 이용시 차별행위 금지**	

	제30조의 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 및 유형, 자산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 정책을 비롯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의 결정·시행과정에 있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참여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제30조의 2 : 장애인 탈시설 등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 규정**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책이 없이 지역사회 자립이 매우 어려움, 이에 관련내용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라도 규정을 넣어 자립생활지원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 및 의료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의료행위 및 의료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② 뒷부분 삭제 **-신설 ③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 -④ 성별 이외의 내용 추가 -⑤ 성별 이외의 내용 추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가정,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사이버 공간 등에서 장애인 등에 대해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다음 각호의 괴롭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두 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장애인 등을 소외시켜 반복적으로 인격적인 무시 또는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일체의 행위 2. 장애인 등에 대한 유기 방임, 신체적·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행위	**-제32조 조항 전면수정** **-① 괴롭힘의 종류 각호로 정리**	-괴롭힘 조항을 전면 재구성 : 괴롭힘 등의 종류를 각호로 정리하여 괴롭힘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 또한 언론 미디어 유투브 등 각종 매체에 대한 규정을 넣어서 괴롭힘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구성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의 행위 4. 장애인 등(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이나 행위 5. 장애인인 등(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 및 행위 6. 그 밖에 사회적 지위·관계, 장애의 유무·유형·정도 등을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장애인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주는 표현 또는 행위 ② 언론 보도, 방송·방송프로그램(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3	-② 미디어에서의 괴롭힘 내용 규정 -②-->③ -⑥-->④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현행법령	개정안	개정내용	개정이유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활동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누구든지'로 변경 수범자 범위 확대 -조항 ②~③-->제1절(고용)으로이동 **-신설 ② : 성평등 관련조항 추가** -④-->③ -⑤-->④	직장보육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은 타 조항으로 이동, 장애여성에 대한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남김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③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⑥ 삭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강구하여야 하고 -->마련하여야 하고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 통합교육, 통합보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통합교육, 통합보육 추가	단순히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배제뿐아니라 통합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동시에 보육의 부분에 대하여 함께 규정하여 장애아동의 연령별 필요에 따라 차별금지 규정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① 장애를 이유로 삭제 '차별없이'로만 수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차별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에 알맞은 서비스와 교육을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성별 위치변경 / 교육을 추가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 금지 등)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 금지 등)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정신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및 자료 배포	-②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정책적 조치 각호로 정리	

	2. 정신적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지원 3. 정신적 장애인이 언론, 방송, 통신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현행법령	개정안	개정내용	개정이유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 및 피해자,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정권고 통보시 피해자, 진정인 포함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⑤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및 진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⑤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 및 피해자, 진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정명령 신청시 진정인 포함 -⑤ 시정명령 통보시 피해자, 진정인 포함	시정명령 과정에서 시정명령의 신청권한자를 확대하고, 시정명령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 이외에 피해자나 진정인 등 개별 이해관계자도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정명령 조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현행법령	개정안	개정내용	개정이유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를 가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징벌적손해배상 내용 추가**	-법 제정당시 논의되었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도입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④이 조항에 따른 소송의 관할은 민사법원으로 한다.		
	48조의2(소송비용의 특례) 이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은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소의 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소송비용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당사자가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가 어려움, 이에 비용 특례의 조항을 신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48조의3(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의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지는 자, 차별행위를 시정할 권한이 있는 자 및 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지는 자는 차별행위를 시정할 권한이 있는 자와 협력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장애인 관련인을 포함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항신설 : 차별행위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의무 규정 추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장애인등에 대하여 가해자와의 분리, 휴식, 안정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자 등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지는 자, 차별행위를 시정할 권한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장애인차별 등 피해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장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지는자, 차별행위를 시정할 권한이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 등 사실을 신고한 자 및 피해장애인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⑥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장애인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10. 5. 11.> ④ 삭제 <2010. 5. 11.> ⑤ 삭제 <2010. 5. 11.>			
	제51조(벌칙) 제48조의3 제5항,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③에 따르는 벌금 규정 추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 개정안 비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장애라 함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 또는 기능저하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09. 5. 22., 2010. 5. 11., 2011. 3. 29.,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17. 9. 19., 2020. 6. 9.>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4.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8.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9.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0.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상업적 목적의 상품 및 용역광고를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이용·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을 제외한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8.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19. “탈시설”이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20.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21.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2.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3.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 또는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혐오표현 및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

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5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정책·관행·절차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3항은 제5조 차별판단 제2항으로 이동>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1항 삭제>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금지)누구든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과거 장애 경력이 있었던 자 및 장애가 있다고 추측되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현행법령>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익옹호 및 차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대상,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참여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8조의2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8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의무)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와 제3항에 따른 참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의2(법적용의 원칙)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및 이 법령에서 예시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차별금지) ②사용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로 이동>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기의 설치·운영 및 보조인의 배치

7. 원할한 수유지원, 자녀상태 확인을 위한 소통방식 지원 등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7. 8. 장애여성에서 이동>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이나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제한, 배제,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에 대해 전학을 강요하거나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교육책임자는 장애인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장애를 고려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신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6. 징계절차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교육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의사소통조력인 지원 <신설>

7.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호 → 7호)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신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

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및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 이 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현행유지>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를 위한 출입문, 위생시설, 피난 및 대피시설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의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를 위한 보조인력(지원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를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보청기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에서 본법으로 이동>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인력 및 호출수단, 이동 및 교통수단에 대한 알기 쉬운 이용 및 대피 안내, 그 밖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1(재난 등 안전관리상황에서의 차별금지) <신설>

① 누구든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하 '안전관리상황'이라 한다,)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장애인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2. 장애인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장비 및 용품의 안전점검 및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애유형별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에 관련 정보의 제공

5. 그밖에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참여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쉬운 말 설명,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1. 7. 27.>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6. 2. 3., 2021. 7. 27.>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3. 3. 23., 2017. 7. 26., 2021. 7. 27.>

⑥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1., 2014. 1. 28., 2017. 12. 19., 2021. 7. 27., 2021. 12. 7.>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5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11., 2013. 8. 13., 2021. 7. 27.> [제목개정 2010. 5. 1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21조(정보접근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전면수정>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21호・제22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한국수어, 문자, 음성, 쉬운 말 설명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 2(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신설>

①공공기관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음성통역・쉬운 말 설명・보청기기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진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음성통역・쉬운 말 설명・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이 전항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의 3(방송·통신·출판에서의 차별금지) <신설>

①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우리말 녹음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말 녹음 추가)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

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 납본한 경우는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른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 29.>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제23조(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읽기쉬운 자료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읽기 쉬운 자료, 보청기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에서 본법으로 이동>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좌담회

토론문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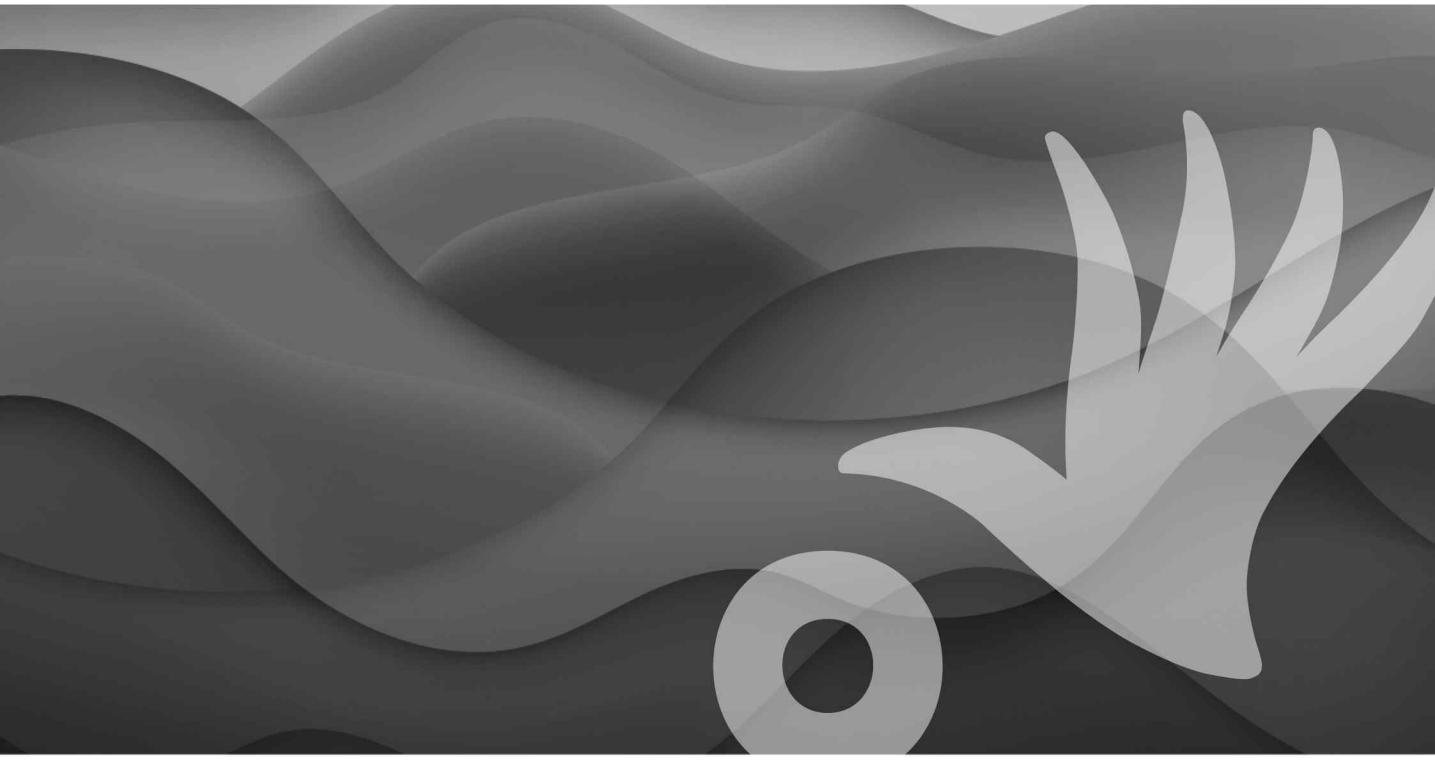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토 론

서원선(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1. 제2조(장애와 장애인)

□ 개정안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장애라 함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 의견

기존 손상을 기준으로 정의된 장애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인 기준으로 변경한다. 확장된 장애의 개념은 사회적 기준·규범 등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 편견, 부당한 대우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차별, 편견, 부당한 대우를 유발하는 장애나 질병(예를 들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 개념을 확대하여 기타 신체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나 질병(예를 들어, 정상 세포 성장 기능, 소화기능, 내분비기능, 생식기능 등)도 장애 범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미국장애인법개정법률(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of 2008)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도 1990년에 제정된 후 장애의 개념에 대해 논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초기에 장애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폭넓게 해

석되도록 ADA를 제정하였으나 ADA의 장애에 대한 정의는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ADA 제정 이후 여러 법원판결에 의해 그 정의가 축소·제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미 국회는 2008년에 미국장애인법개정법률(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of 2008, ADAAA)을 통과시켰다.

ADAAA의 주요 취지는 ADA에서 규정한 장애의 정의에 대한 제한된 사법부의 해석을 거부하려는 것이며 초기 ADA가 의도한 장애에 대한 폭넓은 보호와 해석을 재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2009년 1월 1일부로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 ADAAA는 ADA의 장애에 대한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여러 대법원의 발표와 기존 장애에 대한 편협한 정의를 개선하였다.

2009년도 개정의 목표는 ADA 하에서 개인이 보호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ADA의 장애 개념에 기초해 개인이 장애를 쉽게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2009년도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 주요 일상생활 활동의 정의를 확대함. 기존에 명시한 여러 종류의 활동(예를 들어, 걷기)과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활동(예를 들어, 읽기, 구부리기, 의사소통하기 등)을 포함해 주요 신체 기능(예를 들어, 면역체계 기능, 정상 세포 성장 기능, 소화 기능, 대장 기능, 방광기능, 신경기능, 뇌기능, 폐 기능, 혈액순환 기능, 내분비 기능, 생식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 일반적인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제외한 장애를 경감시킬 수 있는 도구나 방법은 개인의 장애 유무를 평가하는데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함.

- 일시적 혹은 경감된 손상이 주요 일상생활 유지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장애로 인정함.

**** 참고**

토요타자동차(Toyota Manufacturing Inc.) v. 윌리엄즈: 534 US 184 (2002)

1997년에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토요타자동차는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엘라 윌리엄즈(Ella Williams)라는 직원이 업무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 그러나 윌리엄즈는 조립 라인에서 장시간 일해 손목터널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이 발생했으며 본인의 장애로 인해 회사에 정당한 편의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였고 결국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윌리엄즈는 회사가 ADA를 위반한 것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켄터키주 지방법원(District Court)은 윌리엄즈의 장애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현저하게(substantially) 제약하지 않아 ADA에서 언급하는 장애의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요타자동차의 승소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서는 윌리엄즈의 장애는 손으로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제약한다고 판결하였다. 항소법원은 윌리엄즈가 공구를 쥐거나 일정 기간 동안 손과 팔을 이용한 작업을 반복적으로하기 어렵다는 점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된 활동을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2.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개정안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익옹호 및 차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대상,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참여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견

장애인 권익옹호 및 차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 장애인식개선 교육과의 교육내용, 교육 범위 등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해 여러 기관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기존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별 예방에 대한 교육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경우 소수장애인이나 소수장애 단체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소수장애인의 차별 경험은 타 장애인들과 비교해 상이할 수 있어 소수장애인의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제8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의무)

□ 개정안

제8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의무)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중략...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의견

실태조사에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2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장차법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실태조사에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문회의, 전문가회의, 심층인터뷰 등에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초빙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이미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수의 채널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4.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개정안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기의 설치·운영 및 보조인의 배치
7. 원활한 수유지원, 자녀상태 확인을 위한 소통방식 지원 등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의견

고용유지와 관련해 사내에서 사용하는 내부망(혹은 인프라넷)의 접근성 보장을 각 호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사내 내부망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내부망의 비접근성으로 인해 주체적인 결재, 업무처리, 사내 동료 간 메시지 교환 등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불편은 장애인근로자의 업무지연, 결재불가능, 업무능력 저하 등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근로자의 승진, 업무 완성도, 동료 간의 사회적 소통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사내 내부망의 접근성 보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참고**

김예지 의원, 장애인 인트라넷 접근성 보장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2022. 1. 21, https://theindigo.co.kr/archives/28792)

5. 제21조의 2(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개정안

제21조의 2(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공공기관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음성통역·쉬운 말 설명·보청기기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진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음성통역·쉬운 말 설명·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의견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관련해 뇌병변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의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개정안의 의사소통 편의의 예로 청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편의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으나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대체의사소통체계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 참고**

서원선, 김경량, 이선화 (2020).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이선화 (2017). 시청각중복장애인(Deaf-Blind)의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6.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개정안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음료대 및 판매대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중략...

7.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의견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체육활동기관이 제공해야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서비스의 정의나 범위가 모호하며 체육활동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전문적 혹은 준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7. 제30조의 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개정안

제30조의 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 및 유형, 자산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 정책을 비롯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의 결정·시행과정에 있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참여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견

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장차법의 목적이나 취지와 부합하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해당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8. 제46조(손해배상)

□ 개정안

제46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를 가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견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장애 차별을 예방하는데 바람직하다. 특히 차별의 정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차별의 엄중함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업체의 규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 참고**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2023). Remedies for employment discrimination. DC: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US$1=1,300원

상시 근로자 15-100명: 최고 $50,000

상시 근로자 101-200명: 최고 $100,000

상시 근로자 201-500명: 최고 $200,000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최고 $300,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좌담회

토론문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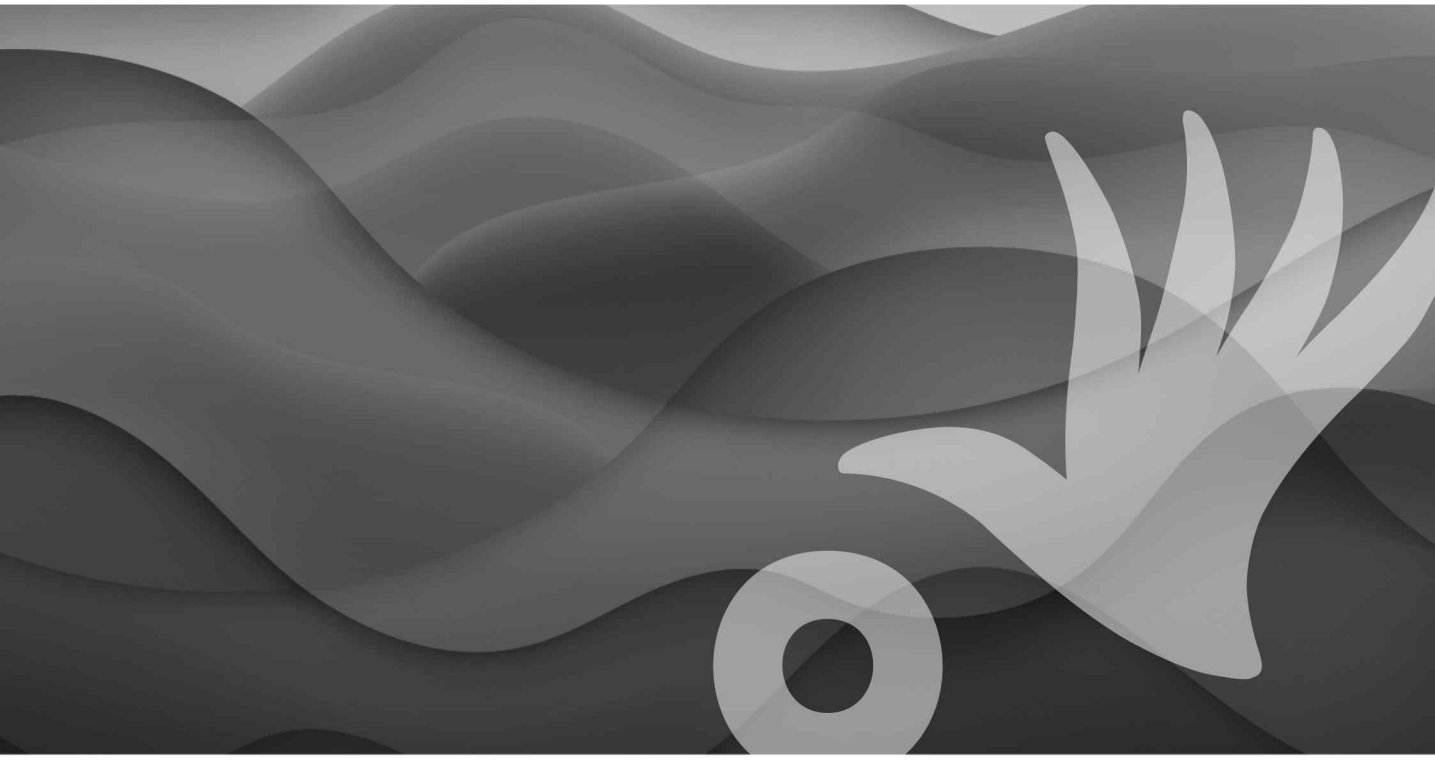

MEMO

MEMO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좌담회

토론문

시설과 정신병원이 아닌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위한 필요한 서비스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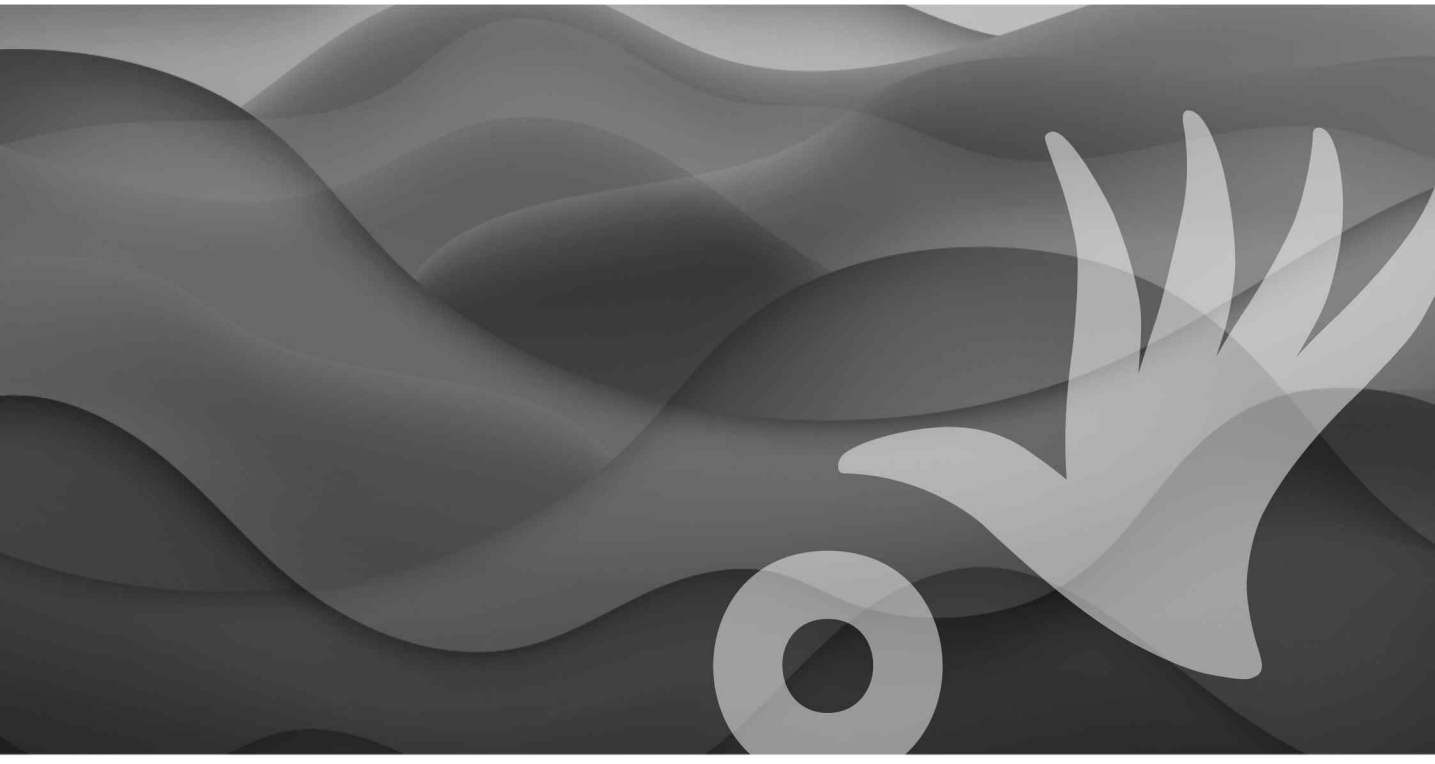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토론문

시설과 정신병원이 아닌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위한 필요한 서비스

신석철(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센터장)

어떤 법이든 제정과정에서 필수적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관계에 놓인 당사자가 법안 구성에 참여해야 하는 점입니다. 정신장애인 적용받는 법이 제정 된다면, 당연히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표자는 이 자리가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안구성에 반영될 수 있는 계가기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발표자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써 장차법에 개정안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들을 제한 하고자 합니다.

1.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구제 미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함. 이 때 장애등록여부는 무관하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장애로 인한 차별행위를 판단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질환자들의 차별에 대해서는 장차법을 이용한 적극적인 진정이나 차별구제청구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에는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이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한 탓도 있겠으나, 정신질환자들이 겪고 있는 특수한 차별적 상황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차법 개정 과정에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미등록 정신질환자를 포괄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장애에 대한 특별한 차별금지 조항의 마련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현행 장차법 제37조에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탈시설 로드맵에 철저하게 배제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

21년 8월 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 매년 약 750명의 장애당사자가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는 '정신장애인'이 철저하게 배제되어있고, 명백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장애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죽음은 그리고 삶의 기본권은 완벽하게 짓밟히고 사라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첫 희생자가 병원에 갇힌 정신장애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함에도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에서 이를 철저히 부정하였습니다.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에서 배제한 정신장애인은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에 약 7만명 정도가 아직도 갇혀 있고, 특히, 정신요양시설에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 매년 수십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인권적인 환경에서 10년 이상 감금된 정신장애인은 동물원의 동물처럼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사회적 장벽'에 가로막혀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권리협약')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등과 같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죽어가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협약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에서는 모든 장애당사자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조치할 것을 명시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CRPD 제 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4조)심리사회적 장애 및 또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의적으고 강제적인 치료 특히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도록 이를 보장하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문 또는 잔혹한, 비 인도적

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나 처벌로부터 자유(15조) 당사국이 항정신성 약물과 신체적 억압의 사용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것을 강력이 권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 되어야 할 점은 첫 번 째로 정신장애인 탈원화 로드맵 구축 두 번째로는 정신요양시설 탈원화 및 탈수용화 및 단계적 폐쇄 세 번째 정신의료기관 탈원화 및 탈수용화 및 단계적 공공성 확대가 가장 시급한 해결 되어야 하며, 이번 장차법 개정안에 제 3조 정의 19조 탈시설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탈원화라는 정의까지 포함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 하였을 때 격리 강박 통신의 자유 제한 등 특수한 유형의 장애인 확대 내 지 차별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당사자 당면한 차별적 현실

1) 현재 정신장애인 고용현황 및 문제점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체(상시근로자 1명 이상)에서 고용한 장애인 상시근로자는 총 20만5,039명, 이 중 정신장애인은 2,854명이 상시근로자로 나타나 단 1.4%에 불과한 수치를 보였다.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고용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취업지원 확대나 일자리 창출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정신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같은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법률은 28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모자보건법 등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격이나 면허 취득을 무조건 제한하고, 나머지 22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득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강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구제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한 것이 지금의 현 주수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취득 제한 제도가 개선되기는커녕 아동분야 채용조건이나 전자바우처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규범 또한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같은 존엄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주체임을 인정하며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자격·면허

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유엔(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며,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차별이라는 점에서 국제인권규범에도 저촉되며,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낙인과 고용기회의 높이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현행 법령에서도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법률로 배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자는 즉각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관련법령 28개 조항 폐지를 되어야 합니다.

2)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기준을 개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정신장애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15개 장애 유형 중 서비스 급여량이 가장 적습니다. '21년 상반기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전체 장애인은 10,845명이며 이 중 82.3%인 8,923명이 수급을 인정받습니다. 반면 정신장애인의 경우 733명이 신청했으나 61.5%인 451명만이 수급을 인정받아, 신청 대비 수급 인정률이 약 20% 차이를 보입니다.(2021.10.13. 메디컬투데이 기사 발췌).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라는 특성으로 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람마다 그 크기와 모양이 다릅니다. 환청과 망상으로 인해 혼자 밖에 나갈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조현병 당사자는 약 2~3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가 있다면 병원 외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병원치료를 거부하던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외래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은 그 순간만이라도 그를 장애인으로 존재하게 하지 않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신체장애인 당사자 선배님들의 피땀으로 얻어낸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장애 중심의 서비스는 장애에서도 정신장애를 차별하는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모든 서비스는 어떤 장애 유형이든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기반 마련–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 정당한 편의 마련

2020년 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낮은 취업률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평균 35개월로 정신장애인 중 가장 짧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신장애인은 취업이 된 후에도 정신장애, 지속적인 치료,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직업의 유지가 쉽지 않고 다양한 지소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유연한 직무조정, 정신경간 상담지원 등에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단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정신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편의는 명하시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제1항

-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항

-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개정안 교용 및 교육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도록 법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들은 권리조차 박탈당한 상황에 놓여왔습니다. 또한 정신장애계

는 아직도 너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관심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토론회가 차별적 상황에 놓인 장애인들의 현실을 재확인하고 더 나은 권리구제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자리이므로 앞으로의 장애 운동에서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함께 싸워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 복지서비스에서의 격차 등을 해소하고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범장애계 단체에서 힘을 실어주길 부탁드리며, 발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구분	결격조항	소관부처
절대적 결격조항	모자보건법 제15조의2 제2호[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	보건복지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8 제2호[수상구조사]	해양경찰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수렵면허]	환경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호[어린이집 설치 운영]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주세법 제19조 제4항[주류제조관리사]	기획재정부
상대적·절극적 결격조항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6조의2 제7항 제1호[이용사 및 미용사, 위생사]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 제1항[영양사]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1호[요양보호사]	보건복지부
	발산업육성법 제18조 제1항 제2호[발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농림축산식품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의3 제1호[수산질병관리사]	해양수산부
	수의사법 제5조 제1호[수의사]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위생법 제54조 제1호[조리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호[동물실험시설 운영, 관리, 실험동물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제5조 제1항[약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호[응급구조사]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8조 제1호[의료인]	보건복지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제2호[장례지도사]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의 응시]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활동지원인력]	보건복지부
	축산법 제12조 제2항 제2호[가축수정사]	농림축산식품부
	화장품법 제3조 제2항 제1호[화장품제조판매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료기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
상대적·소극적 결격조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 제82조 및 동시행령 제42조 제1항[운전면허]	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제1항 제2호[수상레저조종면허]	해양경찰청
	철도안전법 제11조[철도차량운전면허]	국토교통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부 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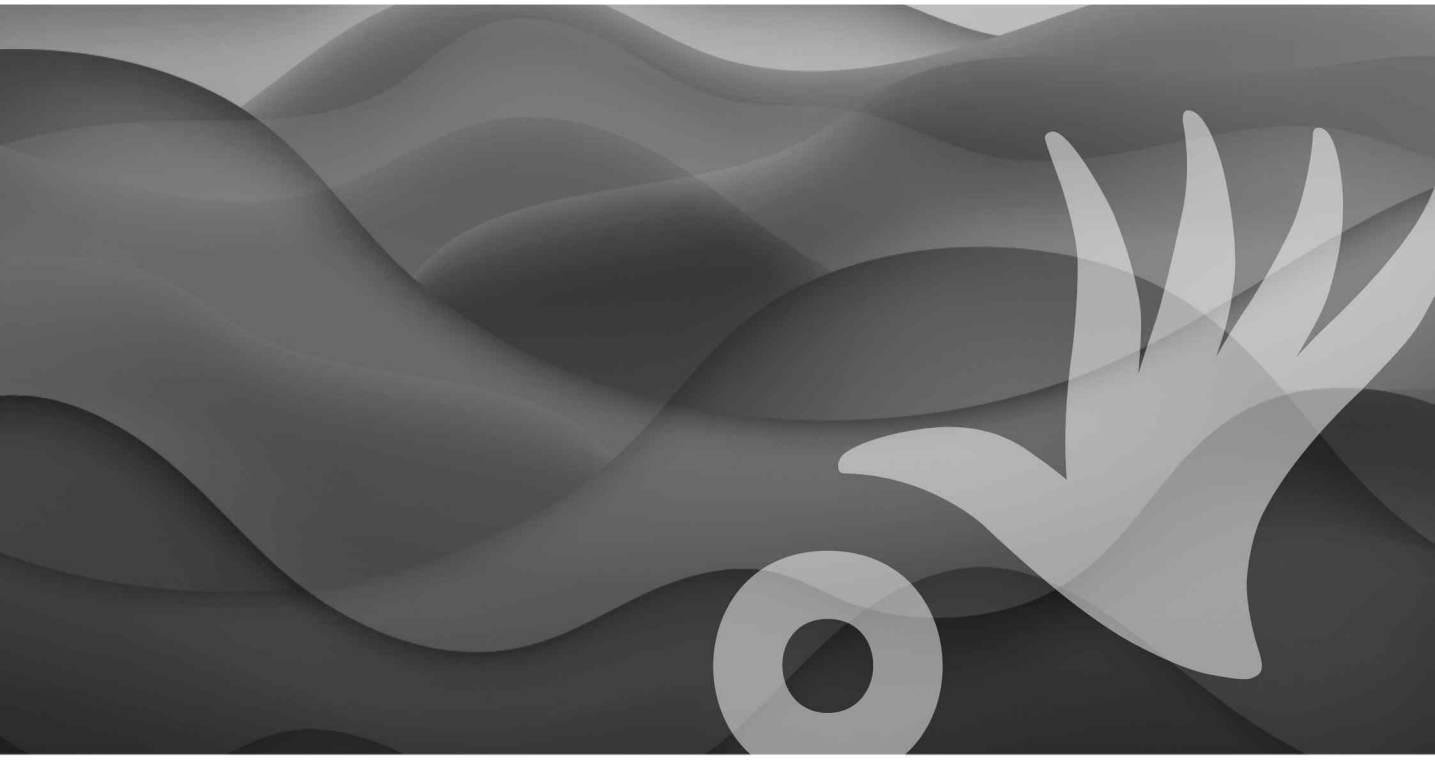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2023. 3. 28. 장애차별조사1과 작성[1)]>

Ⅰ. 진정사건 접수 현황

가. 장애차별 사건 접수 현황(2008. 4. 11. ~ 2022. 12.)

(단위: 건)

접수 년도	합계	2008. 4.11.~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16,672	585	725	1,695	886	1,340	1,313	1,138	1,148	1,512	1,435	1,137	1,215	1,051	752	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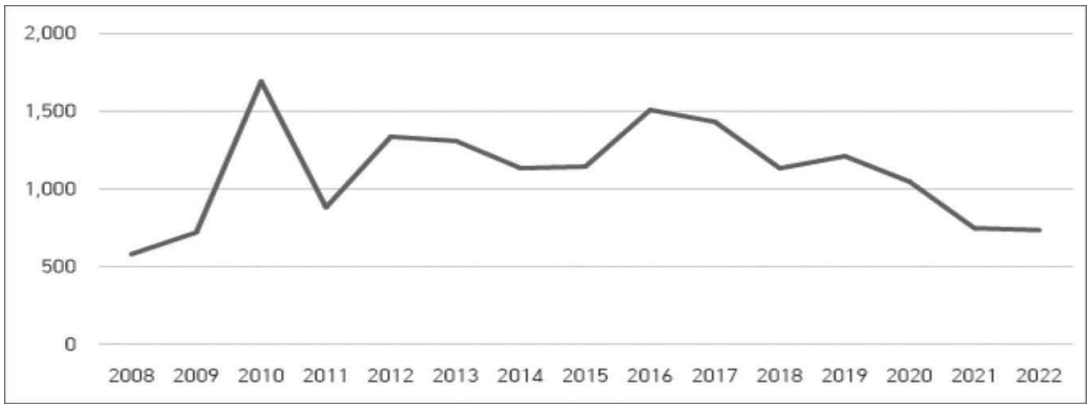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장애차별 사건 접수 추이

1) 국가인권위원회 e-진정시스템 통계보고서(통계연보), 2022년도(2023. 2. 16.마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등)침해'는 제외함

나.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 11. ~ 2022. 12.)

(단위: 건)

연도(년) 구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1 (11~12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4.10)	2008 (4.11~12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진정건수	연도별	13	20	18	54	121	116	256	55	585	725	1,695	886	1,340	1,313	1,138	1,148	1,512	1,435	1,137	1,215	1,051	752	740
	월평균	6.5	1.7	1.5	4.5	10.1	9.7	21.3	16.5	67.2	60.4	141.3	73.8	111.7	109.4	94.8	95.7	126.0	119.6	94.8	101.3	87.6	62.7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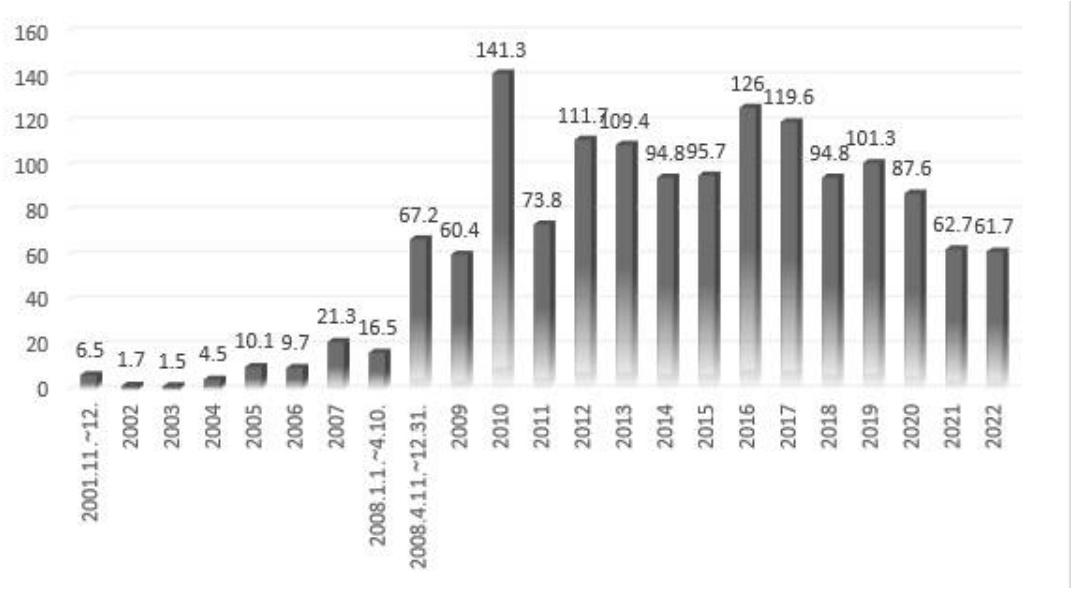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22.1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접수기간	차별사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38,526	100	21,201	55.0	17,325	45.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 11. 25. ~ 2008. 4. 10.	4,269	100	3,16	84.7	653	**15.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 4. 11. ~ 2022. 12. 31.	34,257	100.0	17,585	51.3	16,672	**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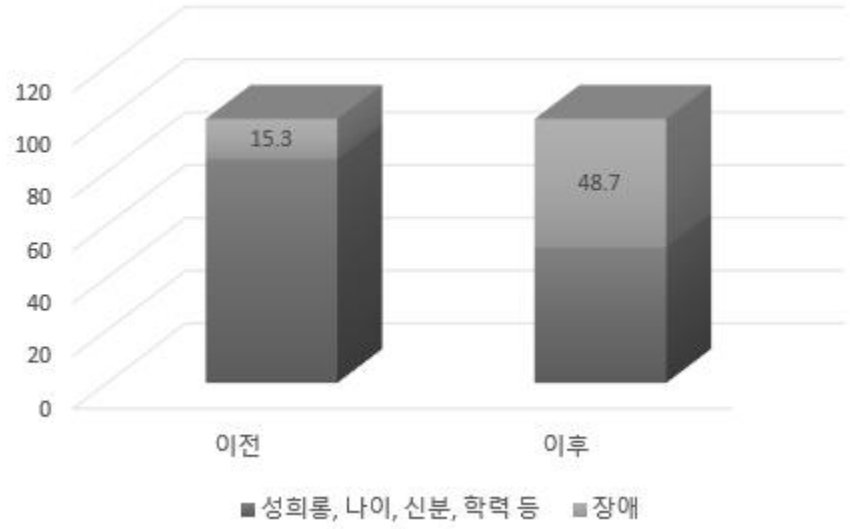

[그림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비율(%)

라. 연도별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접수년도	차별사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34,257**	**100.0**	**17,585**	**51.3**	**16,672**	**48.7**
장애인차별금지 법 시행 **이후** (연도별)	2008. 4. 11. ~	1,111	100.0	526	47.3	585	52.7
	2009	1,685	100.0	960	57.0	725	43.0
	2010	2,681	100.0	986	36.8	1,695	63.2
	2011	1,803	100.0	917	50.9	886	49.1
	2012	2,549	100.0	1,209	47.4	1,340	52.6
	2013	2,495	100.0	1,182	47.4	1,313	52.6
	2014	2,196	100.0	1,058	48.2	1,138	51.8
	2015	2,188	100.0	1,040	47.5	1,148	52.5
	2016	2,433	100.0	921	37.9	1,512	62.1
	2017	3,170	100.0	1,735	54.7	1,435	45.3
	2018	2,206	100.0	1,069	48.5	1,137	51.5
	2019	2,726	100.0	1,511	55.4	1,215	44.6
	2020	2,423	100.0	1,372	56.6	1,051	43.4
	2021	2,558	100.0	1,806	70.6	752	29.4
	2022	2,033	100.0	1,293	63.6	740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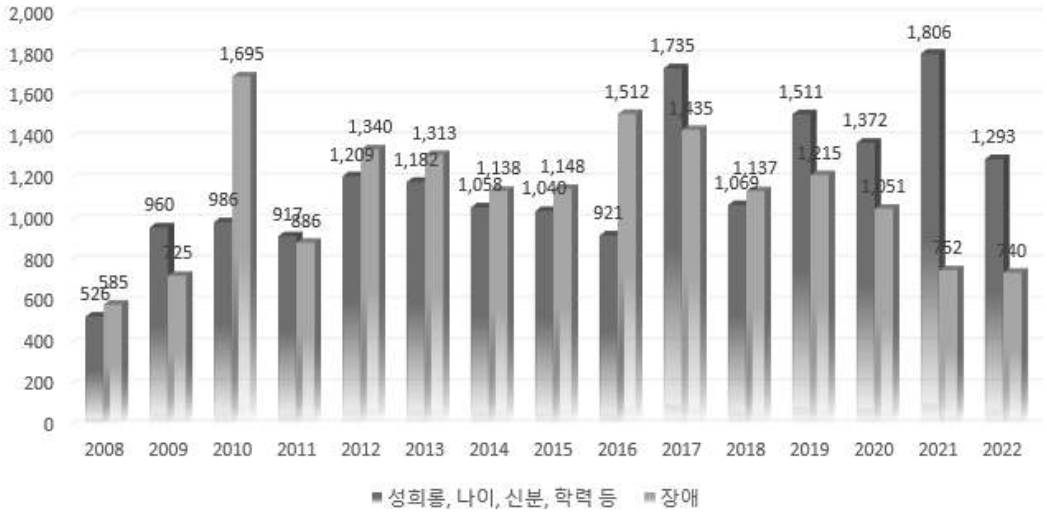

[그림 4]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연도별, 건수)

Ⅱ. 진정사건 접수 세부 현황

가.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 4. 11. ~ 2022. 12. 31.)

(단위: 건, %)

접수년도	구분	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언어	발달	정신	기타
합계	계	16,672	5,262	4,391	1,124	1,610	117	1,790	614	1,764
	비율	100.0	31.6	26.3	6.7	9.7	0.7	10.7	3.7	10.6
2008 (4. 11.~)	건수	585	72	85	35	45	1	29	15	303
	비율	100.0	12.3	14.5	6.0	7.7	0.2	5.0	2.6	51.8
2009	건수	725	288	91	69	46	11	70	44	106
	비율	100.0	39.7	12.6	9.5	6.3	1.5	9.7	6.1	14.6
2010	건수	1,695	508	427	136	275	8	182	72	87
	비율	100.0	30.0	25.2	8.0	16.2	0.5	10.7	4.2	5.1
2011	건수	886	297	142	57	72	8	214	48	48
	비율	100.0	33.5	16.0	6.4	8.1	0.9	24.2	5.4	5.4
2012	건수	1,340	494	192	85	140	13	231	47	138
	비율	100.0	36.9	14.3	6.3	10.4	1.0	17.2	3.5	10.3
2013	건수	1,313	382	299	70	251	7	115	50	139
	비율	100.0	29.1	22.8	5.3	19.1	0.5	8.8	3.8	10.6
2014	건수	1,138	403	290	91	112	13	104	55	70
	비율	100.0	35.4	25.5	8.0	9.8	1.1	9.1	4.8	6.2
2015	건수	1,148	333	440	93	101	5	102	31	43
	비율	100.0	29.0	38.3	8.1	8.8	0.4	8.9	2.7	3.7
2016	건수	1,512	628	329	102	93	7	247	61	45
	비율	100.0	41.5	21.8	6.7	6.2	0.5	16.3	4.0	3.0
2017	건수	1,435	424	580	98	98	12	103	54	66
	비율	100.0	29.5	40.4	6.8	6.8	0.8	7.2	3.8	4.6
2018	건수	1,137	312	429	94	80	14	128	20	60
	비율	100.0	27.4	37.7	8.3	7.0	1.2	11.3	1.8	5.3
2019	건수	1,215	315	295	60	77	5	97	47	319
	비율	100.0	25.9	24.3	4.9	6.3	0.4	8.0	3.9	26.3
2020	건수	1,051	417	352	48	95	6	50	24	59
	비율	100.0	39.7	33.5	4.6	9.0	0.6	4.8	2.3	5.6
2021	건수	752	194	240	29	67	4	66	29	123
	비율	100.0	25.8	31.9	3.9	8.9	0.5	8.8	3.9	16.4
2022	건수	740	195	200	57	58	3	52	17	158
	비율	100.0	26.4	27.0	7.7	7.8	0.4	7.0	2.3	21.4
등록 장애인 구성비[2)]	인원(명)	2,644,700	1,191,462	251,620	248,308	411,749	23,064	255,207	104,214	159,076
	비율	100.0	45.1	9.5	9.4	15.6	0.9	9.6	3.9	6.0

2)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21. 12. 기준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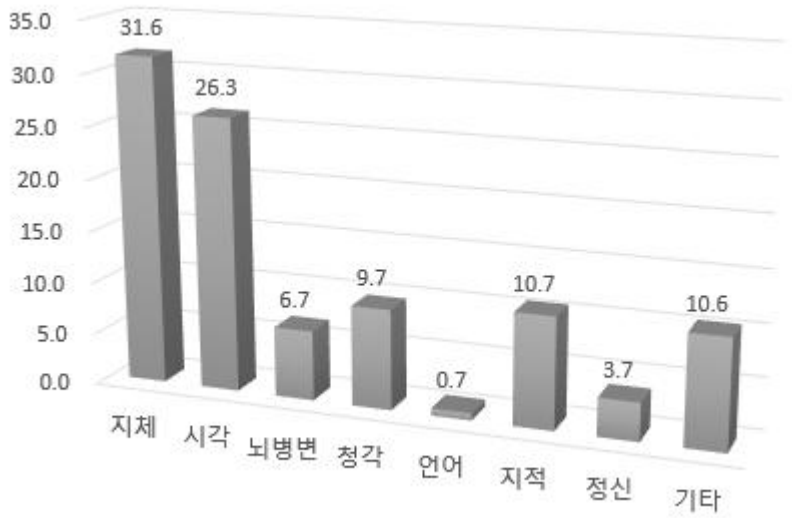

[그림 5]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비율(%) (2008. 4. 11. ~ 2022. 1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나.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22.12.31.)

(단위: 건, %)

접수년도	구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합계	건수	16,672	1,068	1,554	10,413	633	1,803	1,201
	비율	100.0	6.4	9.3	62.5	3.8	10.8	7.2
2008 (4. 11.~)	건수	585	41	61	347	55	42	39
	비율	100.0	7.0	10.4	59.3	9.4	7.2	6.7
2009	건수	725	69	49	412	42	105	48
	비율	100.0	9.5	6.8	56.8	5.8	14.5	6.6
2010	건수	1,695	82	55	1,269	39	177	73
	비율	100.0	4.8	3.2	74.9	2.3	10.4	4.3
2011	건수	886	64	62	488	80	105	87
	비율	100.0	7.2	7.0	55.1	9.0	11.9	9.8
2012	건수	1,340	82	97	807	93	115	146
	비율	100.0	6.1	7.2	60.2	6.9	8.6	10.9
2013	건수	1,313	75	45	708	71	305	109
	비율	100.0	5.7	3.4	53.9	5.4	23.2	8.3
2014	건수	1,138	94	67	678	61	121	117
	비율	100.0	8.3	5.9	59.6	5.4	10.6	10.3
2015	건수	1,148	67	55	734	38	123	131
	비율	100.0	5.8	4.8	63.9	3.3	10.7	11.4
2016	건수	1,512	56	536	644	62	89	125
	비율	100.0	3.7	35.4	42.6	4.1	5.9	8.3
2017	건수	1,435	79	92	1,002	29	94	139
	비율	100.0	5.5	6.4	69.8	2.0	6.6	9.7
2018	건수	1,137	55	61	786	34	113	88
	비율	100.0	4.8	5.4	69.1	3.0	9.9	7.7
2019	건수	1,215	80	72	734	29	201	99
	비율	100.0	6.6	5.9	60.4	2.4	16.5	8.1
2020	건수	1,051	78	86	805	0	82	0
	비율	100.0	7.4	8.2	76.6	0.0	7.8	0.0
2021	건수	752	72	91	501	0	88	0
	비율	100.0	9.6	12.1	66.6	0.0	11.7	0.0
2022	건수	740	74	125	498	0	43	0
	비율	100.0	10.0	16.9	67.3	0.0	5.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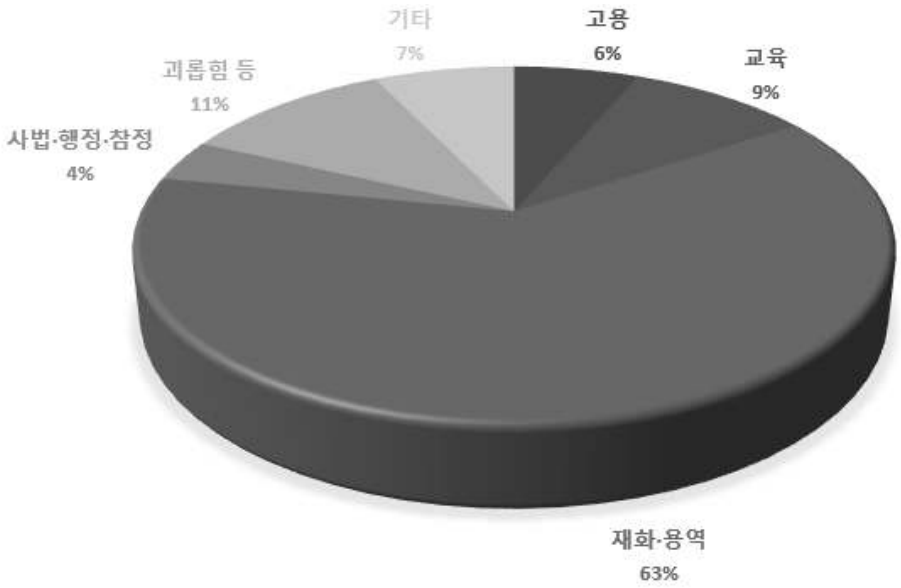

[그림 6]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22.12.3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 차별영역별, 피진정인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22.12.31.)

(단위: 건, %)

접수년도	접수건수	피진정인 구분	비율 (%)	계 (건수)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합계	16,672	공공계	8,367	50	429	1,247	5,006	568	505	612
		민간계	8,305	50	639	307	5,407	65	1,298	589
2008 (4. 11.~)	585	공공	30	175	12	23	105	25	3	7
		민간	70	410	29	38	242	30	39	32
2009	725	공공	33	242	16	27	129	36	19	15
		민간	67	483	53	22	283	6	86	33
2010	1,695	공공	68	1,150	26	39	978	34	33	40
		민간	32	545	56	16	291	5	144	33
2011	886	공공	55	486	18	49	267	77	22	53
		민간	45	400	46	13	221	3	83	34
2012	1,340	공공	52	701	34	90	387	90	22	78
		민간	48	639	48	7	420	3	93	68
2013	1,313	공공	33	438	37	39	215	68	26	53
		민간	67	875	38	6	493	3	279	56
2014	1,138	공공	34	390	28	47	196	56	17	46
		민간	66	748	66	20	482	5	104	71
2015	1,148	공공	40	455	21	48	247	38	30	71
		민간	60	693	46	7	487	0	93	60
2016	1,512	공공	61	921	29	530	212	61	23	66
		민간	39	591	27	6	432	1	66	59
2017	1,435	공공	57	820	27	85	575	27	22	84
		민간	43	615	52	7	427	2	72	55
2018	1,137	공공	44	501	22	49	307	29	49	45
		민간	56	636	33	12	479	5	64	43
2019	1,215	공공	56	676	52	62	338	27	143	54
		민간	44	539	28	10	396	2	58	45
2020	1,051	공공	64	676	47	62	533	0	34	0
		민간	36	375	31	24	272	0	48	0
2021	752	공공	58	435	29	40	324	0	42	0
		민간	42	317	43	51	177	0	46	0
2022	740	공공	41	301	31	57	193	0	20	0
		민간	59	439	43	68	305	0	23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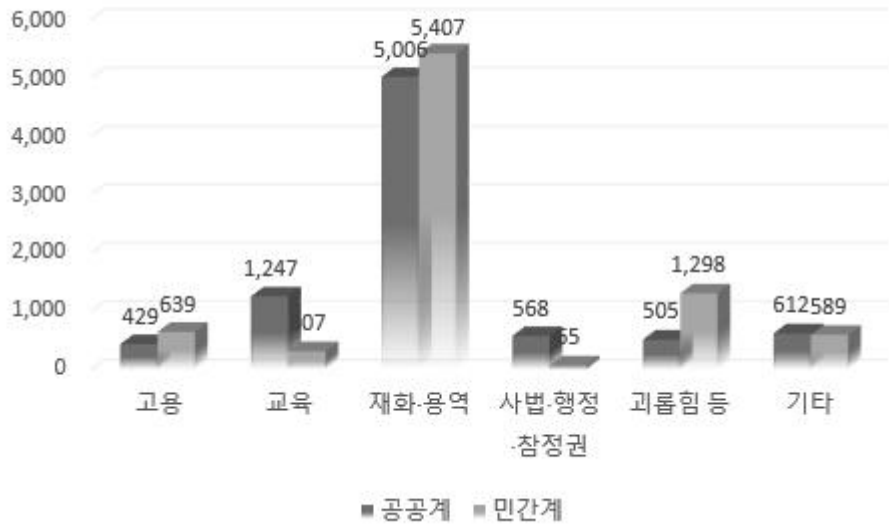

[그림 7] 차별영역별, 피진정인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22.12.3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Ⅲ. 진정사건 처리

가.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22.12.31.)

(단위: 건)

연 도 (년) 구 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1 (11~12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4.10)	2008 (4.11~12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13	20	18	54	121	116	256	55	585	725	1,695	886	1,340	1,313	1,138	1,148	1,512	1,435	1,137	1,215	1,051	752	740
처리	-	22	18	39	116	90	255	455		721	1,101	952	1,508	1,563	1,096	1,085	1,641	1,091	1,326	899	1,340	835	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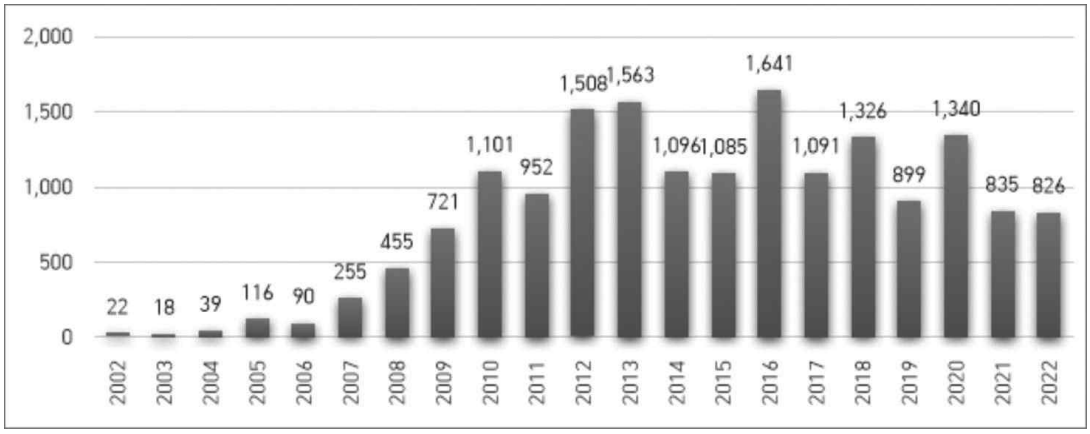

[그림 8]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22.12.31.)

나. 장애차별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2008.4.11.~2022.12.31.)

(단위: 건, %)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조정*	합의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차별 아님/ 사실아님)			
총계	16,399	9,416	5,563	830	5	446	4,282	3,853	6,903 (4,852)	20	60
구성비 (%)	100	100.0	100	14.9	0.1	8.0	77.0				
			59.1					40.9			
			57.4						42.1	0.1	0.4
2008년	413	243	156	22	0	12	122	87	169 (88)	1	0
구성비 (%)	100	100	100	14.1	0.0	7.7	78.2				
			64.2					35.8			
			58.8						40.9	0.2	0.0
2009년	721	419	226	10	0	47	169	193	292 (181)	4	6
구성비 (%)	100	100	100	4.4	0.0	20.8	74.8				
			53.9					46.1			
			58.1						40.5	0.6	0.8
2010년	1,101	549	374	28	1	56	289	175	531 (241)	6	15
구성비 (%)	100	100	100	7.5	0.3	15.0	77.3				
			68.1					31.9			
			49.9						48.2	0.5	1.4
2011년	952	637	378	124	0	32	222	259	310 (160)	1	4
구성비 (%)	100	100	100	32.8	0.0	8.5	58.7				
			59.3					40.7			
			66.9						32.6	0.1	0.4
2012년	1,508	994	485	116	0	21	348	509	512 (392)	1	1
구성비 (%)	100	100	100	23.9	0.0	4.3	71.8				
			48.8					51.2			
			65.9						34.0	0.1	0.1
2013년	1,563	895	524	29	0	79	416	371	667 (371)	0	1
구성비 (%)	100	100	100.0	5.5	0.0	15.1	79.4				
			58.5					41.5			
			57.3						42.7	0.0	0.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14년	1,096	622	294	17	1	61	215	328	466 (359)	3	5
구성비 (%)	100	100	100	5.8	0.3	20.7	73.1				
			47.3					52.7			
		56.8							42.5	0.3	0.5
2015년	1,085	575	323	17	0	19	287	252	504 (402)	0	6
구성비 (%)	100	100	100	5.3	0.0	5.9	88.9				
			56.2					43.8			
		53.0							46.5	0.0	0.6
2016년	1,641	637	411	19	3	29	360	226	997 (851)	0	7
구성비 (%)	100	100	100	4.6	0.7	7.1	87.6				
			64.5					35.5			
		38.8							60.8	0.0	0.4
2017년	1,091	716	490	71	0	21	398	226	371 (270)	0	4
구성비 (%)	100	100	100	14.5	0.0	4.3	81.2				
			68.4					31.6			
		65.6							34.0	0.0	0.4
2018년	1,326	786	547	28	0	11	508	239	538 (375)	1	1
구성비 (%)	100	100	100	5.1	0.0	2.0	92.9				
			69.6					30.4			
		59.3							40.6	0.1	0.1
2019년	899	406	204	67	0	14	123	202	492 (386)	0	1
구성비 (%)	100	100	100	32.8	0.0	6.9	60.3				
			50.2					49.8			
		45.2							54.7	0.0	0.1
2020년	1,340	985	715	185	0	18	512	270	354 (268)	1	0
구성비 (%)	100	100	100	25.9	0.0	2.5	71.6				
			72.6					27.4			
		73.5							26.4	0.1	0.0
2021년	835	448	216	50	0	17	149	232	383 (264)	0	4
구성비 (%)	100	100	100	23.1	0.0	7.9	69.0				
			48.2					51.8			
		53.7							45.9	0.0	0.5
2022년	828	504	220	47	0	9	164	284	317 (244)	2	5
구성비 (%)	100	100	100	21.4	0.0	4.1	74.5				
			43.7					56.3			
		60.9							38.3	0.2	0.6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예비조사 또는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각하, 기각 처리한 경우임.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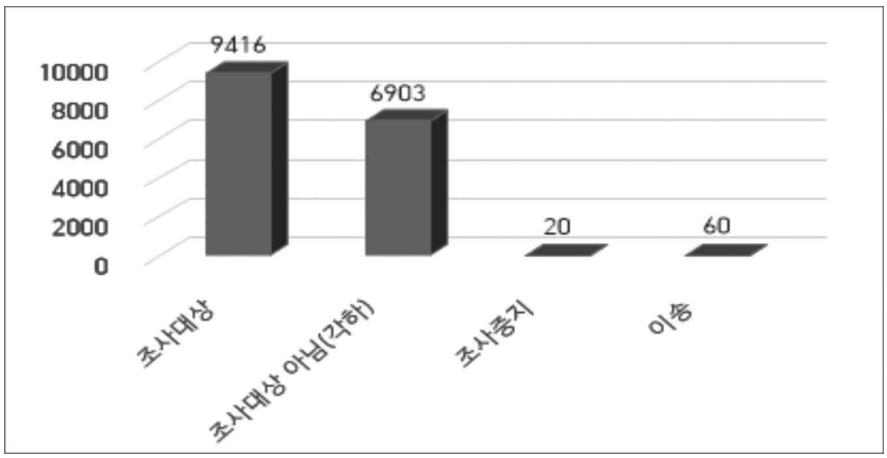

[그림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사건의 조사대상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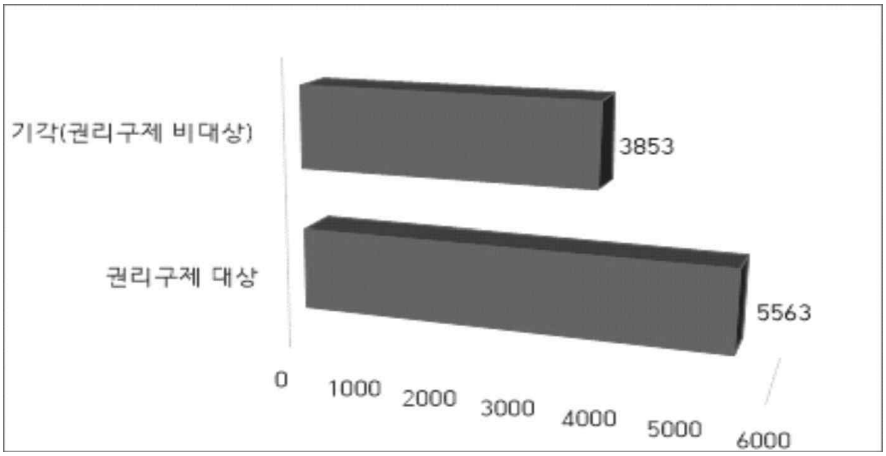

[그림 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조사대상 사건 중 권리구제대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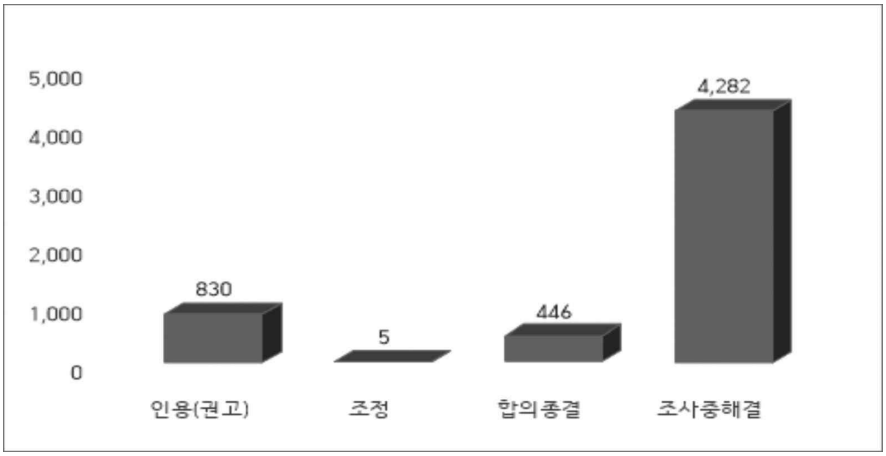

[그림 1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권리구제 대상사건 처리 결과

다.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8.4.11.~2022.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조사중지	이송
			소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인용(권고)	조정성립*	합의종결**	조사중해결***	기각(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건수	16,399	9,416	5,563	830	5	446	4,282	3,853	6,903	20
	비율(%)	100	100	59.1				40.9			
			57.4						42.1	0.1	0.4
고용	건수	1,046	499	228	45	0	50	133	271	541	3
	비율(%)	100	100	45.7				54.3			
			47.7						51.7	0.3	0.3
교육	건수	1,495	588	379	53	0	45	281	209	904	0
	비율(%)	100	100	64.5				35.5			
			39.3						60.5	0.0	0.2
재화·용역	건수	10,231	6,709	4,107	609	5	240	3,253	2,602	3,496	9
	비율(%)	100	100	61.2				38.8			
			65.6						34.2	0.1	0.2
사법·행정/참정권	건수	635	361	192	56	0	4	132	169	272	1
	비율(%)	100	100	53.2				46.8			
			56.9						42.8	0.2	0.2
괴롭힘 등	건수	2,992	1,259	657	67	0	107	483	602	1,690	7
	비율(%)	100	100	52.2				47.8			
			42.1						56.5	0.2	1.2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예비조사 또는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각하, 기각 처리한 경우임.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라. 장애차별사건 시정권고 현황(2008.4.11.~2022.12.31.)

(단위: 건)

구 분	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권고 사건 수	830	45	53	609	56	67

Ⅳ.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현황

가.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 현황 (2008.04.11.~2022.12.31.)

(단위: 건, %)

종료년도	소계	1호*	2호**	3호***	4호****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법원확정판결/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함	제32조 제3항 **********
합계	9,034	1,311	44	164	105	186	12	121	6,949	115	6	21
구성비(%)	100.0	14.5	0.5	1.8	1.2	2.1	0.1	1.3	76.9	1.3	0.1	0.2
2008	221	54	1	6	11	2	1	2	139	5	0	0
구성비(%)	100.0	24.4	0.5	2.7	5.0	0.9	0.5	0.9	62.9	2.3	0.0	0.0
2009	353	56	0	9	5	14	1	10	238	19	1	0
구성비(%)	100.0	15.9	0.0	2.5	1.4	4.0	0.3	2.8	67.4	5.4	0.3	0.0
2010	663	227	2	10	19	16	0	6	369	13	1	0
구성비(%)	100.0	34.2	0.3	1.5	2.9	2.4	0.0	0.9	55.7	2.0	0.2	0.0
2011	381	94	3	7	4	17	1	7	228	17	3	0
구성비(%)	100.0	24.7	0.8	1.8	1.0	4.5	0.3	1.8	59.8	4.5	0.8	0.0
2012	615	62	3	14	9	16	4	9	494	3	0	1
구성비(%)	100.0	10.1	0.5	2.3	1.5	2.6	0.7	1.5	80.3	0.5	0.0	0.2
2013	755	215	5	37	2	20	0	6	459	9	1	1
구성비(%)	100.0	28.5	0.7	4.9	0.3	2.6	0.0	0.8	60.8	1.2	0.1	0.1
2014	560	52	3	8	11	17	1	2	452	10	0	4
구성비(%)	100.0	9.3	0.5	1.4	2.0	3.0	0.2	0.4	80.7	1.8	0.0	0.7

2015	663	49	1	8	7	14	1	12	561	8	0	2
구성비(%)	100.0	7.4	0.2	1.2	1.1	2.1	0.2	1.8	84.6	1.2	0.0	0.3
2016	1,199	101	12	11	4	16	0	3	1,048	3	0	1
구성비(%)	100.0	8.4	1.0	0.9	0.3	1.3	0.0	0.3	87.4	0.3	0.0	0.1
2017	634	60	1	11	7	13	1	5	529	6	0	1
구성비(%)	100.0	9.5	0.2	1.7	1.1	2.1	0.2	0.8	83.4	0.9	0.0	0.2
2018	780	127	1	13	4	6	0	8	614	5	0	2
구성비(%)	100.0	16.3	0.1	1.7	0.5	0.8	0.0	1.0	78.7	0.6	0.0	0.3
2019	564	58	10	6	5	15	1	7	458	3	0	1
구성비(%)	100.0	10.3	1.8	1.1	0.9	2.7	0.2	1.2	81.2	0.5	0.0	0.2
2020	762	46	1	14	5	4	1	10	675	5	0	1
구성비(%)	100.0	6.0	0.1	1.8	0.7	0.5	0.1	1.3	88.6	0.7	0.0	0.1
2021	466	62	1	4	5	12	0	26	345	8	0	3
구성비(%)	100.0	13.3	0.2	0.9	1.1	2.6	0.0	5.6	74.0	1.7	0.0	0.6
2022	418	48	0	6	7	4	0	8	340	1	0	4
구성비(%)	100.0	11.5	0.0	1.4	1.7	1.0	0.0	1.9	81.3	0.2	0.0	1.0

* 1호 각하: 조사대상 아님
** 2호 각하: 거짓/이유없음
*** 3호 각하: 조사를 원하지 않음
**** 4호 각하: 1년 이상 경과
***** 5호 각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종결
****** 6호 각하: 익명/가명제출
******* 7호 각하: 적절하지 않음
******** 8호 각하: 진정취하/이중 진정이 해결되어 취하한 경우 1,224건
********* 9호 각하: 기각건의 동일사실 재진정
********** 제32조 제3항: 조사중각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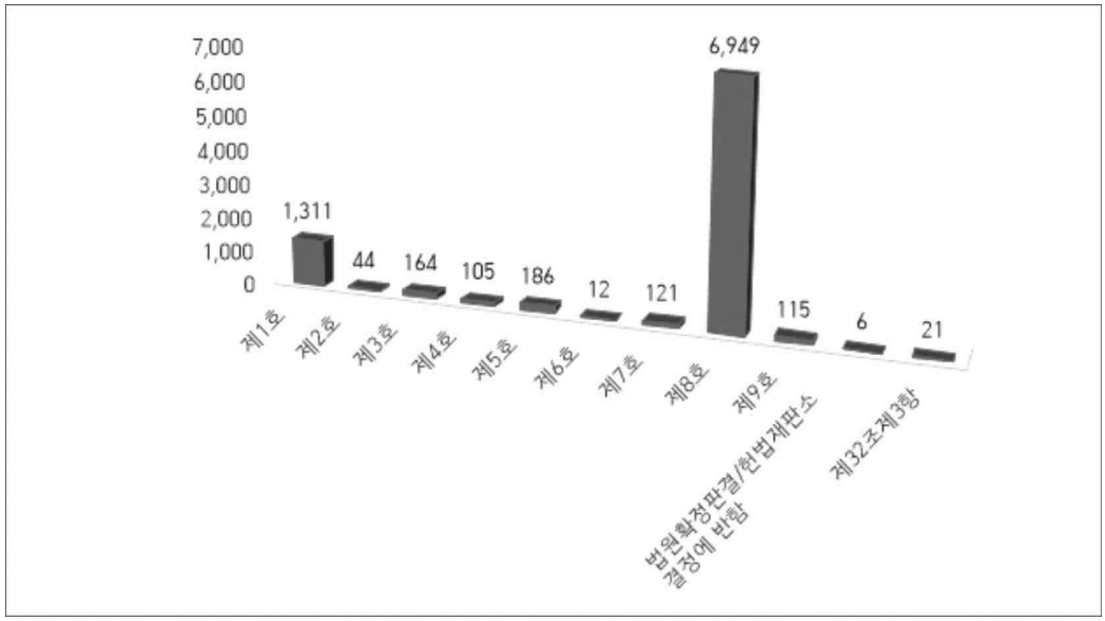

[그림 12]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 현황(2008.4.11. ~ 2022.12.3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 개정할 결심

| **발행일** | 2023년 4월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961 | **F A X** | (02) 2125-0924

| **웹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디자인모장

| **전 화** | (02) 2278-1990 | **F A X** | (02) 2278-1992

| **ISBN** | 978-89-6114-960-0 9333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장애차별조사1과
Tel : (02)2125-9961, Fax : (02)2125-0924 http://www.humanrights.go.kr
ISBN : 978-89-6114-960-0 93330